

# 교회 헌법과

## 보칙

2020

북미주 개혁신교회에서 독자를 위해 제공하는 한국어 번역입니다. 번역에 대한 의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총회 사무실([translate@crcna.org](mailto:translate@crcna.org))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내용

### 머리말

#### 교회 헌법과 보칙

### 서문

#### 1. 교회 헌법의 목적과 기초

### I. 교회의 직분

#### A. 총칙

2. 교회의 특별직분
3. 교회 직분의 자격
4. 특별 직분의 소명
5. 직분자서약

#### B. 목사 (말씀의 사역자)

6. 목사의 자격
7. 정규 신학교육 없이 사역을 허가 받는 경우
8. 청빙 후보자격
9. 카운슬러의 역할
10. 안수와 취임
11. 목사의 직무
12. 한정된 임무에 목사의 청빙
13. 목사의 감독

- 14. 목사의 해직과 재안수
- 15. 목사의 생활비
- 16. 목사의 휴직
- 17. 교회에서 목사의 해임
- 18. 목사의 은퇴
- 19. 신학교
- 20. 신학교수의 임무
- 21. 신학생 기금
- 22. 신학생의 설교 인허

#### C. 전도목사 (Commissioned Pastors)

- 23. 전도목사 임무와 기능
- 24. 전도목사의 청빙

#### D. 장로와 집사

- 25. 장로와 집사의 사역

### II. 교회의 회의

#### A. 총칙

- 26. 회의들
- 27. 교회 회의의 권위
- 28. 회의에서 다룰 안건
- 29. 교회 회의 결정의 성격
- 30. 장소
- 31. 결정의 변경 요청
- 32. 교회 회의의 절차와 순서
- 33. 회의의 위원회
- 34. 회의의 총대

#### B. 카운실 (카운실)

- 35. 카운실의 구성
- 36. 모임 횟수와 상호책임
- 37. 교인총회
- 38. 교인의 자격

#### C. 노회

- 39. 노회의 구성
- 40. 노회의 회기
- 41. 목회 관련 문제에 대한 질문과 토의

42. 노회 카운슬러와 시찰회

43. 노회의 지원과 권면권

44. 인근 노회와 연합사역

#### D. 총회

45. 총회의 구성

46. 총회의 모임

47. 총회의 임무

48. 총회감독 (Synodical Deputies)

49. 교회연합 관계

50. 교회연합 단체들

### III. 교회의 임무와 사역

#### A. 예배

51. 예배의 요소와 절기

52. 예배에 대한 당회의 규정

53. 예배의 실행

54. 설교

55. 성례의 집례

56. 유아세례의 집례

57. 성인세례의 집례

58. 유효한 세례

59. 입교

60. 성찬식의 집례

61. 공중 예배의 기도

62. 헌금

#### B. 신앙교육

63. 청소년 신앙교육

64. 성인 신앙교육

#### C. 목양

65. 목양의 실행

66. 교적의 이전

67. 교적의 유지와 소멸

68. 교적부

69. 결혼예식 집례

70. 장례식

71. 기독교 학교

72. 교회 모임들

#### D. 교회의 사역

73. 교회의 필수 목회사역

74. 지역교회의 사역

75. 노회의 사역

76. 교단의 사역

77. 총회의 운영

### IV. 교회의 훈계와 징계

#### A. 총칙

78. 훈계와 징계의 목적

79. 교인 상호간의 책임

80. 당회의 권위

#### B. 교인에 대한 훈계와 징계

81. 출교와 교적의 회복

#### C. 직분자에 대한 훈계와 징계

82. 특별징계

83. 특별징계의 근거

84. 직분의 회복

### 결론

85. 교회간 그리고 직분 간의 평등

86. 교회헌법의 개정

## 머리말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북미주 개혁신교회 (Christian Reformed Church in North America)의 중요한 문서인 **교회헌법과 보칙** (Church Order and Its Supplements)을 보고 계십니다. 이 제목이 좀 진부해서 “교회가 사용해야 할 도구”로 바꾸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자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지역교회와 노회 (지역교회들의 모임) 그리고 총회(매년 열리는 전체 교단의 모임)에서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자를 통해서 일반성도들도 북미주 개혁신교회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교회헌법은 무엇입니까?

교회헌법은 북미주 개척교회의 교회들이 어떻게 모여서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한 교단의 문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헌법은 지도자들로 하여금 교회의 여러가지 상황에서 일할 때에 알아야 할 규정과 제한을 알게 하여 효과적인 지도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교회헌법은 단순한 규정집이나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우리 교단의 교제 안에서 함께 약속한 기록입니다. 북미주 개척교회의 회중, 지도자, 그리고 성도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함께 사는 삶을 지도하기 위해서 이 헌법을 사용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러한 언약에의 헌신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고백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지도자를 선택할 때, 모일 때, 문제를 연구할 때, 교회의 사명과 사역을 펼칠 때,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일을 하면서 서로를 도우며 세워갈 때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반영으로 나타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지킬 것과 필요한 경우 이 규정들을 수정할 때에도 함께할 것에 동의합니다. 교회헌법이 교회들의 문서라는 사실과 해석과 수정에 있어서 교회가 동역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헌법은 우리가 함께 작성한 우리의 문서입니다. 우리 교단이 다양화됨에 따라서, 다양한 상황의 여러 다른 교회들을 포용하는 것까지 일반규정으로 설정한 교회헌법은 우리들 사이의 통일성과 일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문학에 다양한 장르가 있고, 성경에도 다양한 장르가 있듯이, 교회헌법에도 여러 장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교회헌법은 잠언과 같은 **지혜문학**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세대에 걸쳐 모아진 교회의 지혜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됩니다. 교회헌법의 각 조항의 목적은 교회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 헌법 개정에 대하여

우리가 교회와 문화의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한다면 교회의 삶과 사역에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교회헌법을 수정해야 할 필요를 느낄 때에 교회는 함께 의논하여 결정합니다. 그러한 일반적인 절차는 한 지교회의 카운실이 헌법 개정에 대한 헌의안을 노회로 보내고, 이를 다시 총회로 보내는 절차입니다. 각 절차를 거치면서 더 많은 지도자들이 그 사안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부름을 받은 사역자들은 우리가 함께 살도록 부르신 소명을 이루고, 그리고 오늘날의 세상에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헌법을 개정하게 되는데, 개정은 교단의 가장 상위 모임에서 결정합니다. 중요한 개정을 할 경우에는 총회에서 다루기 전에 모든 교회에서 먼저 논의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지 못했다면 개정된 조항은 그 다음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즉, 우리는 헌법을 개정할 수 있지만, 개정 절차를 신중하게 처리하여 교회의 모든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과 절차는 헌법 1조에서 인용하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고린도전서 14:40절은 예배의 무질서에 관한 구절이지만, 그러나 이는 동시에 성도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합당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강조합니다. 교회헌법은 이러한 원리를 교회의 구성과 사역에 있어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데 적용합니다.

교회헌법을 개정하고 삶에 적용하려는 우리의 헌신은 우리 교회의 신학의 훌륭한 선배 중 한 분인 존 칼빈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 사역과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할 지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시대의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한 가지의 유형을 만들지 않으셨다.) 우리는 교회의 모든 사역을 주님께서 주신 일반적인 규칙을 따라서 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상세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의 구성과 사역이 각 나라와 시대의 습관에 따라 달라야 하기 때문에 교회는 유익을 위하여 전통적인 실행을 개정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한다. 물론 나는 충분하지 않은 이유로 성급하게 개정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러한 개정이 교회를 유익하게 할 지 아니면 해치게 될 지는 사랑이 판단하게 된다. 그래서 사랑이 교회를 인도하게 한다면 모든 것은 안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기독교강요, IV.x.30)

칼빈은 헌법이 건전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운영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몇몇 규정들은 융통성있게 사용되기를 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칼빈은 교회헌법에 관한 이러한 논의들이 사랑의 원칙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 다른 문서에 관하여

독자들은 본 교단에서 펴낸 교회헌법 (Church Order), 교회헌법 보칙 (Church Order Supplements), 그리고 별도로 발행한 총회절차 규칙 (Rules for Synodical Procedure)을 구분해야 합니다.

**교회헌법**은 교회의 구성과 활동을 규정하는 조항들의 모음으로서, 교회의 직분, 회의, 임무와 사역, 그리고 교회의 훈계와 징계라는 네 가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회헌법 보칙**은 총회에서 결의한 결정 내용으로서, 교회들이 알아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이므로 교회헌법과 함께 기록된 것들입니다.

**총회절차 규칙**은 북미주 개혁신교회의 연례 총회 기능을 위한 지침으로서, 총회의 구성, 임무와 책임, 그리고 모임의 규칙을 포함하며, 교단의 웹사이트 ([www.crcna.org](http://www.crcna.org))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교단의 결정은 매년 출판되는 **총회 회의록 (Acts of Synod)**에 실려 있습니다. 모든 총회의 회의록과 함께 교단의 신학과 윤리에 관한 중요한 결정도 교단 웹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개혁신주의 교회정치 (Church Polity)

북미주 개혁신교회는 운영과 구성의 형태로는 장로들의 관리로 운영되는 장로회 제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독들의 다스림으로 운영되는 (카톨릭교회, 감리교회, 성공회 등) 감독제도와는 다르고, 또한 지역교회 자율적 운영방식을 가진 (회중교회, 침례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등) 회중제도와도 다릅니다. 물론 많은 회중교회의 운영방식 또한 큰 틀에서는 지교회 간의 연합과 연결을 담보합니다.

장로들에 의한 운영은 본 교단 헌법의 기본이지만, 장로교단과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의 다른 점이 있는데, 첫째는 본 교단에서 장로와 집사는 종신직이 아니라 봉사하는 임기(*terms*)가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목사의 교적(*credential*)이 다른 장로교단이나 개혁신교단과 같이 해당지역 노회에 있지 않고 지역교회 카운실에 있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점은 북미주 개혁신교회의 운영과 구성에서 교회헌법은 신앙고백과 같은 지위가 없기 때문에 교회헌법은 신조와 같은 권위를 가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본 교단에서 신조와 신앙고백은 성경에 종속하며, 교회헌법은 신조와 신앙고백에 종속됩니다.

## 새로운 형식

교회의 새로운 상황에 맞추어 총회는 거의 매년 헌법을 수정해 왔습니다. 여러 결정과 수정들이 만들어 놓은 불일치와 모순을 수정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2009-2010년에 작업하여 완성한 본 책자는 교회헌법과 보칙을 읽고 사용하기 쉽도록 재구성되었습니다.

교회헌법과 부칙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매년 혹은 필요한 경우 적절히 개정되는 최근판 <북미주 개혁신교회 운영교본> (*Manual of Christian Reformed Church Government*, *표/터 보그돌프 박사 저*)을 참고하십시오. 이 책은 CRC 전자도서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crcna.org/Library](http://crcna.org/Library))

그리스도의 교회를 품위 있고 질서있게 섬기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합니다.

# 교회헌법과 보칙

## 서문

### 제1조

- a. 북미주 개혁신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과 함께 개혁신주의 신조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해석한 것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심을 인정하고, 모든 직분자들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엡 4:12)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품위있게 하고 질서있게 하라” (고전 14:40)는 사도적인 교훈을 따라, 아래의 조항에서 본 교회의 구성과 사역을 규정한다.
- b. 본 교회헌법에서 다루는 주요 주제들은 교회의 직분, 교회의 회의, 교회의 임무와 사역, 그리고 교회의 훈계와 징계이다.

## I. 교회의 직분

### A. 일반규정

#### 제2조

본 교회는 말씀의 사역자인 목사와, 장로, 집사 그리고 전도목사의 직분을 인정한다. 이 직분들은 그 요구와 임무만 다를 뿐, 그 지위와 영예에 차이가 없다.

#### 제3조

- a. 성경적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적 신앙고백을 한 모든 성인 세례교인은 목사, 장로, 집사, 전도목사 로 선출될 수 있다.
- b. 공식적으로 청빙받아 안수 또는 취임한 자만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일할 수 있다.

- 제 3조 a, 제 45조와 제 48 조 a보칙 참조.



### 제3조 a항 보칙

#### 규칙

1. a. 모든 교회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이 목사, 장로, 집사, 그리고 전도목사로 섬기도록 허락할 수 있다.  
  
b. 노회는, 교회의 직분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그들의 성경이해에 따라서, 여성 직분자의 (목사, 장로, 집사, 전도목사) 노회참석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  
  
c. 합당하게 선출되고 안수를 받은 모든 직분자는 총회에 총대로 파송될 수 있다. 직분자는 그의 신념에 반하여 참여하도록 강요 받지 않는다.
2. 총회감독 (synodical deputy)들은 교회헌법의 6~18조와 82~84조에 언급된 목사직 관련 사안에 대하여 그들의 신념에 반하여 참여하도록 강요받지 않는다.
3. 모든 노회는 소속 교회가 자기의 성경에 대한 신념에 따라서 직분자를 선출하고 안수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노회의 멤버는 직분자에 대한 시험과 직분자의 교적증명에 관한 과정에서 그 신념에 반하여 참여하도록 강요받지 않는다. 여성 직분자에 대한 시험은 **임시노회 (classis contracta)**에서 여성 직분에 반대하지 않는 교회의 대표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다.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웃 노회의 교회의 대표를 초대하여 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
4. 본 교단과 교류하는 외국의 교회가 여성 안수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본 교단의 여성 목사가 그 곳에서 사역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
5. 자격을 갖춘 여성이 제출한 목사안수 신청서를 고려할 때에 교단 목회자후보위원회 (Candidacy Committee)와 총회는 이사와 총대들이 자기의 신념에 반하여 참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총회에서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결정할 때 총대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6. 교단대표는 여성 직분자들이 (목사, 장로, 집사, 전도목사) 노회에 총대로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노회들의 목록을 마련해야 한다.

(2007 총회 회의록, 610~12쪽)

## 제4조

a. 직분자를 선출할 때 카운실은 교회 앞에 선출할 직분자 수 보다 최소한 두배 많은 후보자를 공천해야 한다. 카운실이 선출할 직분자 수의 배수보다 적게 공천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 제4조 a 보칙 참조

b. 카운실은 공천하기 전에 교회로 하여금 직분에 적합한 은사를 갖춘 사람들을 추천하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c. 직분자 선출은 교인총회에서, 카운실의 감독하에 기도한 후에 카운실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투표권 자격은 하자가 없는 모든 세례교인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d. 각 직분에 선출된 사람들이 각 직분에 선출되었음을 공표된 후에, 그들에 대한 정당한 사유의 반대가 없을 경우에는 카운실은 그들을 임직한다. 안수와 취임은 교단 서식을 사용하여 공중예배 때에 실시한다.

## 제4조 a항 보칙

### 레드 메사(Red Mesa) 노회 교회를 위한 수정

직분자를 선출할 때, 카운실은 교회 앞에 선출할 직분의 숫자와 같거나 한 명 이상 더 추천할 수 있다.

(1983총회회의록, 660쪽)

### 제비뽑기 선출방식

회중의 찬반투표가 포함된다면, 직분자를 선거에서 제비뽑기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2003총회회의록, 609쪽)

## 제5조

모든 직분자는 카운실, 노회, 및 총회가 정한 바에 따라 직분자서약 (Covenant for office bearers)에 서명하여 그가 교회의 신앙고백에 동의함을 서약한다.

- 제 5조 보칙 참조

## 제5조 보칙

### 직분자서약 (Covenant for Officebearers)

아래 서명하는 우리는,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복음을 선포하는 영감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우리는 세 가지의 신조, 즉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그리고 아타나시우스 신경이 범교회적인 기독교 신앙의 표현이라고 믿는다. 이 신조들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모든 시대와 나라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동일한 신앙으로 연합해 있음을 고백한다.

또한 우리는 세가지 신앙고백인, 벨직 신앙고백,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및 돌트 신경이 전통적인 개혁신의파 기독교 신앙의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일치하는 신앙고백으로 고백한다. 이들 고백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법과, 복음을 따라 사는 방법과, 더 큰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한 우리의 위치를 알려준다.

신앙의 이러한 양식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그 신앙고백들에 의해서 형성되고 인도받을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그 신앙고백을 굳게 믿으며 충실하게 그것을 권장하고 변호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그 신앙고백들을 따라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저술작업을 하며, 사역을 감당하고 살아갈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인 신조와 신앙고백과 함께, 우리는 또한 현대어 신앙고백인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를 현 시대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형성하고 인도하는 기독교 신앙의 현대 개혁신의 양식임을 인정한다.

우리는 또한 신앙을 고백함에 문제가 있을 때에 형제 자매의 사랑과 교제 안에, 우리 함께 복음의 충만한 이해를 추구하면서, 그것을 표현하고 받을 것을 약속한다. 우리의 신앙고백들 중에서 어느 한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고 믿게 될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의견을 교회헌법과 보칙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교회에 전달할 것을 약속한다. 교회가 요구할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교회의 판단과 권위에 순종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본 신앙고백에 서약함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것을 약속한다.

(2012 총회회의록, 761-62쪽)

\* 신학교수, 목사, 전도목사, 장로, 그리고 집사가 안수를 받을 때나 직분에 취임할 때에 본 서약에 서명한다.

## 이의에 관한 지침 및 규정

총회는 이의를 최소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1. **신앙고백에 대한 개인적 의의:** 서명자가 본 교단의 신앙고백에 동의하는데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표하지만, 신앙고백서 내용의 수정은 요구하지 않는 경우와
2. **신앙고백을 수정을 요구하는 의의:** 서명자가 신앙고백의 특정한 내용의 수정을 건의하는 경우가 있다.

A. 직분자서약을 통해 신앙고백에 동의를 표명하는 것의 의미에 대한 가이드라인:

1. 직분자서약 서명자는 어떠한 유보없이 교회가 인정하는 표준 신앙고백 안에 포함된 모든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교리라고 동의하는 것이다.
2. 직분자서약에 서명하는 것이 교회의 표준 신앙고백의 교리들이 가장 완벽하게 표현되어 있다거나, 또는 우리 교단의 표준 신앙고백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성경의 내용을 모두 다룬다고 선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그 신앙고백이 성경의 가르침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거나, 이단사상이 일일이 밝히고 반박한다고 인정하는 것도 아니다.
3. 직분자서약 서명자는 서명으로써 그 고백한 교리의 내용에 구속될 뿐이지, 그 교리에 부수적인 내용, 즉 그것에 관한 참고사항이나, 그것이 암시하는 것이나, 그것에 대한 논평에 구속되지 않는다. 그는 또한 어떤 사람이 그 고백으로부터 신학적으로 추론한 내용에 구속되지 않는다. 그러나 어느 개인도 표준 신앙고백 내용 중에 어떤 것은 교리이고 어떤 것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나 또는 교회를 대신해서 임의로 판정할 수는 없다. 만약 이런 의문이 생길 경우에는 교단 의결기구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B. 신앙고백에 대한 개인적 이의를 제기할 때 따라야 할 절차에 관한 규칙:

1. 목사 (또는 선교사, 신학교수 또는 지역교회에서 목회하지 않는 목사), 장로 또는 집사는 그들의 이의 사항을 카운실에 제출하여 심사와 판단을 요청해야 한다. 만약 카운실이 판단할 수 없을 경우에 카운실은 노회에 심사와 판단을 요청해야 한다. 만약 노회도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노회는 헌법 제28조 b항 원칙에 따라 총회에 요청해야 한다.
2. 신앙고백에 대한 개인적인 이의를 제기한 사안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교회 전체 토론에 붙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사안은 신앙고백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정보를 요청하는 것이거나 신앙고백의 명확한 의미를 요구하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종류의 진정은 목회적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해당 의결기구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C. 신앙고백 수정을 요구하는 이의를 제기할 때 지켜야 할 절차에 관한 규칙:

1. 교회가 직분자서약에 동의할 것을 요구할 때 갖는 기본적인 전제는 교회의 표준 신앙고백에 포함된 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분히 일치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입증할 책임은 수정을 요구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2. 목사 (또는 선교사, 신학교수 또는 지역교회에서 목회하지 않는 목사), 장로 또는 집사는 신앙고백을 수정하여야 된다는 진정이 있을 경우 이를 카운실에 제출해 심사와 판단을 요청해야 한다. 만약 카운실이 판단할 수 없을 경우에 카운실은 노회에 심사와 판단을 요청해야 한다. 만약 노회도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노회는 헌법 제 28조 b항 원칙에 따라 총회에 요청해야 한다.
3. 카운실과 노회가 이의 제기에 동의할 경우, 상위 의결기구의 헌의안이 되어 전 교회 앞에서 토론할 수 있게 된다.
4. 노회가 이의요청 심사를 부결할 경우, 이는 총회에 항소할 수 있다. 성원을 이룬 총회가 해당 사안을 총회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 경우, 직분자서약에 서명한 모든 직분자는 총회가 결정할 때까지 온 교회와 함께 자유롭게 그 사안에 관하여 논의할 수 있다.
5. 서명자가 카운실의 결정에 대한 이의를 노회로, 노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를 총회로 항소할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항소자가 교회헌법의 다른 규정들을 준수한다면, 단순히 이의를 제기했다는 것만으로 정직이나 기타 다른 징계를 받아서는 안 된다.
6. 총회는 전 교회의 성도들이 개정을 검토할 충분한 기회를 가지기 전에 신앙고백 개정을 채택하여서는 안 된다.

(2012 총회회의록, 762-65쪽)

## B. 목사 (말씀의 사역자)

### 제 6조

- a. 목사 (말씀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합당한 신학 훈련을 마쳐야 한다.
- b. 본 교단 소속의 신학교를 졸업하고 총회에서 말씀의 사역자 후보로 공포된 자는 목사로 청빙 받을 자격이 있다.
- c. 다른 신학교에서 훈련받은 자는 총회 규칙에 규정된 조건들을 충족시키거나 총회에서 말씀의 사역자 후보로 공포되지 않으면 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 제6조 보칙 참조

## 제 6조 보칙

A. 칼빈신학교 이외에서 신학을 공부한 학생은 편목과정 (EPMC)을 마친 후에 본 교단 소속 교회에서 청빙받을 수 있다.

(1924 총회회의록, 38쪽)

B. 신학생은 교단 목회자후보위원회의 인터뷰를 거친 후에 총회에서 안수를 받을 수 있는 후보자로 발표한다. 해당 학생의 학문적인 준비사항, 교리의 건전성, 영적인 적합성, 그리고 인격에 관해서 칼빈신학교 교수진의 추천이 목회자후보위원회에 전달되어야 한다.

(1961 총회회의록, 55쪽)

(2004 총회회의록 수정, 619-20쪽)

C. 정기 총회기간이 아닌 때의 청빙 후보자 발표 규칙

1. 안수 후보자로 공표될 총회가 열리는 시점까지 넷 또는 그 이하의 신학교 학업이 남아 있는 자는 안수 신청을 할 수 있다. 각 과목과 인턴쉽은 하나의 “수업”으로 인정한다.

2. 총회는 이런 학생을 ‘남은 학업의 이수’를 조건으로 조건부 안수 후보로 공표할 수 있다.

3. 신학생이 남은 학업을 마치면 안수 위원회는 후보자가 청빙받을 수 있음을 공표한다.

4. 신학생이 3월 1일까지 남은 학업을 마치지 못했을 경우에는 다시 안수 위원회에 안수 신청을 해야 한다.

5. 후보자가 교단의 교회로부터 청빙을 받지 않았거나 청빙을 받되 수락하지 않았고, 계속 후보 명단에 남고 싶으면 안수 위원회에 5월 15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1975 총회회의록, 111쪽)

(2004 총회회의록 수정, 619-20쪽)

(또한 10조 보칙 참조)

D. 목사 후보자를 놓고 투표할 때에 총회는 후보자를 전체로 묶어 투표한다.

(2006총회회의록, 639쪽)

## 제 7조

a. 정규 신학 훈련을 받지 않았지만 경건, 겸손, 영적 분별,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타고난 은사에 탁월한 증거가 있는 자는 예외적으로 말씀의 사역자로 허락될 수 있다.

b. 이 규정에 따라서 안수받고 목회 할 후보자는 수정된 편목 교육 과정 (EPMC)을 밟아야 한다.

- 제7조 보칙 참조

## 제 7조 보칙

### A. 제7조에 의거하여 청빙 받는 방법

1. 제7조에 따라 목사가 되려는 사람은 목회자후보위원회와 또한 교단 웹사이트 [www.crcna.org/candidacy](http://www.crcna.org/candidacy)에 나온 “7조에 따라 임직받는 과정” (“The Journey to Ministry: Article 7”)을 충실하게 따라야 한다. 해당 노회는 목회자후보위원회로부터 긍정적인 권고를 접수하면 총회 감독의 입회 하에 후보자를 검증하여야 한다. 헌법 7조의 조항에 따라서 목사로 안수를 받고자 하는 후보자는 7조의 높은 기준을 만족함과 동시에 목회할 특정 교회의 상황에서 그를 말씀의 사역자로 청빙하려는 상황에서 안수 과정을 거쳐야 한다.

2. 노회에서 7조에 따른 후보자 시험은 다음과 주제를 포함한다:

a. 신약과 구약 주해

b. 성경 역사

c. 조직신학

d. 일반 교회사, 미국 교회사

3. 만약 신청자가 시험에 합격하면 청빙 후보자로 발표된다.

4. 후보자가 청빙을 받고 수락하면 청빙교회가 속한 노회는 총회 감독의 입회 하에 안수 전 시험을 시행한다. 이 시험은 현재 시행되는 규정을 따르되, 원어시험은 제외한다.

(1920 총회안건집, 26-27쪽;

1922총회회의록, 72-73쪽)

(1996 총회회의록 수정, 581쪽)

### B. 제7조에 따른 청빙에 관한 발표

목회자후보위원회는 7조에 의한 신청자의 적합성을 결정할 때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후보자는 제7조에 언급된 “은사”가 아주 특별해야 한다. 특별한 자질이 없는 사람에게 적용해서는 안된다.

2. 후보자는 제7조에 언급된 자격뿐 아니라 말씀에 대한 뛰어난 지식, 영적인 필요에 대한 지식 및 말씀을 적용하는 타고난 능력을 소유해야 한다.

3. 이 조항은 평신도 사역자가 원할 때에 안수하여 그의 신분을 높여주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목사가 되는 정규 코스는 신학교 훈련을 통해서라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는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항상 지켜져야 한다.

(1947년 총회회의록 채택, 94쪽)

#### C. 레드 메사 노회를 위한 특별 권고

1. 아래 방법은 아메리카 원주민 사역자를 안수하는 방법이다.

a. 복음사역에 소명을 받았다고 느끼고 임직을 받고자 하는 유능한 사람들에게 안수를 위한 정기적인 학업을 받도록 권유한다.

b.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정기적인 학업을 받을 수 없으면 헌법 제7조에 규정된 방법을 따르되 본인의 희망을 카운실, 노회, 그리고 목회자후보위원회에 알린다

2. 헌법 제7조에 근거하여 안수를 받을 때의 절차는 아래와 같다.

a. 카운실와 노회의 고시위원회 (Classis Ministerial Leadership Team)는 제 7조에 규정된 은사에 관한 증명을 서면으로 목회자후보위원회로 발송한다.

b. 목회자후보위원회는 안수 신청서와 함께 카운실와 고시위원회의 추천서를 받으면 신청자가 제 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c. 일차적 판단이 긍정적이라면 목회자후보위원회는 신청자에게 설교권을 발행하여 해당 노회의 여러 교회에서 설교하도록 한다.

d. 2006년 총회 결정에 따라 목회자후보위원회의 모든 다른 규정을 적용한다.

e. 안수를 위한 시험을 규정에 따라서 시행하되, 성경언어 시험을 제외한다.

(1958 총회회의록 채택, 87-88쪽)

(2006 총회회의록, 663쪽)

#### 제 8조

a. 본 교단 목사는 적절한 규정을 따라 교회의 청빙을 받을 수 있다.

b. 미국개혁교회 (Reformed Church in America) 소속 목사는 적절한 규정을 따라 본 교단의 교회의 청빙을 받을 수 있다.

c. 타 교단에서 안수받은 목사가 본 교단 교회의 목사가 되고자 하면 반드시 목회자후보위원회에서 제시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d. 타 교단에서 안수받은 목사는 총회의 모든 필수요건을 충족하여 교회의 청빙받을 자격이 있다고 공포되지 않으면 교회로부터 청빙 받을 수 없다.

- 제8조 보칙 참조

## 제 8조 보칙

### A. 현 교회에서 2년 미만 근무한 목사의 청빙

목사가 없는 교회의 카운실은 특별하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현 교회에 2년 미만 근무한 목사를 청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총회의 판단이다. 만약 노회의 카운슬러가 현직에서 2년 미만 근무한 목사를 노회의 이름으로 승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 그는 그 이유를 노회에 보고해야 된다.

(1916 총회회의록, 29쪽)

### B. 동일한 목사의 1년 이내 재청빙

노회의 권고 없이는 동일한 목사를 1년 이내에 동일한 자리에 두 번 되풀이하여 청빙할 수 없다.

(1906년 총회회의록, 16쪽)

### C. 임기를 정한 목사의 청빙

1. 임기가 정해져 있는 청빙서에는 정해진 기간이 끝났을 때 재임직될 수 있는 가능성 및 방법, 정해진 임기가 끝나서 재임되지 않을 때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교회의 카운슬러는 노회를 대신하여 청빙서에 명시된 임기만료 절차와 조치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인지를 확인해야 된다.

3. 청빙서에 명시된 대로 임기가 끝났을 때 해당 목사는 2년 동안 청빙 받을 자격이 있으며, 그 기간이 지나면 노회는 총회감독의 동의를 얻어 그 목사의 해직을 공표해야 한다.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노회는 총회감독의 동의를 얻어 청빙받을 자격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1987 총회회의록, 575쪽)

4. 목회자 청빙의 임기를 연장할 때에 통상적으로 2년 이상의 목회사역 기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2000 총회회의록, 712쪽)

### D. 미국개척교회(RCA) 소속 목사의 청빙

1. 본 교단 교회는 미국개혁신교회(RCA) 소속 목사를 목회자 교환 규칙 (2005 총회회의록, 741쪽 참조)에 명시되어 있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청빙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계속 성장 가능한 교회에 한해서 적용된다.

2. 목회자 교환은 타 교단의 안수받은 목사가 무기한 또는 장기간의 임기로 청빙하는 교회에서 목회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회를 하는 동안 청빙을 받은 목사는 자신의 교적이 있는 교회의 교인자격을 유지한다.

3. 본 교단에서 안수받고 적절하게 목회를 한 목사는 RCA 교회로부터 연장목회 (extended service)를 위하여 청빙을 받을 수 있으며, RCA에서 안수받고 적절하게 목회를 한 목사는 CRC 교회로부터 교환 목회에 청빙 받을 수 있다.

4. 연장목회란 CRC에서 안수받은 목사가 RCA 교회의 목사로 연장된 기간 동안 목회하도록 청빙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 목회하는 동안 CRC의 목사의 직을 유지한다. 이와 동일하게 RCA에서 안수받은 목사는 CRC 교회에서 연장된 기간 동안 목사로 청빙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RCA의 목사의 직을 유지한다. 이러한 목사는 청빙하는 교회의 규칙을 따라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성례를 집행한다.

5. 목회자 교환 규정은 안수를 받은 목사가 합당한 절차를 통하여 교회연합의 정신으로 타 교단에서 목회할 수 있는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목회자 교환 규정은 청빙하는 교회의 청빙여부에 달려있으며 그 교회의 규칙에 따른다.

6. 타 교단에서 목회하기 위하여 안수받은 목사는 청빙교회의 신학, 예전 전통, 역사, 헌법, 그리고 목회 권징에 관한 지식이 있으며 동의한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7. 연장목회는 목사의 소속 교회와 논의하고 동의를 얻은 후에 허락된다. (CRC 교회에서 이를 논의할 기구는 목사의 교적을 두고 있는 교회의 카운실이며, RCA 교회에서는 목사의 교적을 두는 노회이다.) 목사는 지속적으로 소속된 교회에 교적을 유지한다. 사역이 만료되면 파송교회와 논의하여 청빙교회의 교회헌법에 따라 처리한다.

(2014 총회회의록, 564-65쪽)

8. 목사의 목회 책임과 그 가족에 대한 부양책임은 목회하는 교회에서 작성하는데, 이를 목회사역을 공유하는 CRC와 RCA 양 교단의 파송교회와 청빙교회에 알려야 한다.

9. 목사는 목사의 권징에 관하여 파송교회의 감독을 받는다. 청빙한 교회는 목사가 섬기는 교회의 회중을 감독한다. 파송교회와 청빙한 교회는 상호 연락하고 적절히 동역한다.

10. 각 교회는 목사가 청빙받은 교회의 여러 기구에 참여하도록 허락하는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제38조 g항과 보칙 참조).

11. 안수받은 모든 목사는 자신의 목사직을 두고 있는 교단의 연금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한다. 청빙교회는 연금과 기타 복지비용 지불을 책임진다. (제38조 g항과 보칙 참조)

(2005 총회회의록, 741-42쪽)

12. 한 목회자가 다른 교단의 교회에서 사역하려고 할 때에 그가 우선 자신의 전통에서 신학교육을 받고 거기서 안수받고 목회경험을 가지는 것은 충실하고 적절하게 목회자를 교환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자신의 전통에 바로 서고 목회의 경험을 하는 것은 다른 전통의 교회에서 사역하기 전에 갖추어야 할 필수사항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역은 (신학교 졸업 후 받는) 첫번째 청빙이 되지 않는 것이 좋다.

(2011 총회회의록, 824쪽)

비고: 비록 이 규정이 CRC에서는 유효한 규정으로 채택되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현재 이 규정은 RCA 헌법에는 보이지 않는다.

## E. 타교단 소속의 목사의 청빙

1. 교회가 현실적인 모든 노력을 기울여도 CRC 교회와 RCA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CRC 외부의 타 교단 목사를 청빙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계속 성장 가능한 교회에 한해서 적용된다.

(2005 총회회의록, 742쪽)

2. 본 교단 소속 교회에서 청빙받으려는 타 교단 목사는 목회자후보위원회에 신청하여 적합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그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목회자후보위원회에서 작성한 '교단가입절차' (Journey toward Ordination)에 따라서 진행한다.

3. 교회의 카운실은 노회와 목회자후보위원회의 동의 없이는 타교단의 목사를 청빙할 수 없다. 주요한 논점은 과거 교회헌법 제 8조, E, 4 보칙과 현행 헌법 제 8조의 '교단가입절차'에 따른 청빙의 필요성 항목이다. 일단 카운실, 목사, 노회와 목회자후보위원회가 모두 청빙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면, '교단가입절차'에 따라 가입절차가 시작된다.

4. 목회자후보위원회의 허락을 받아 노회 가입 절차를 마치면, 구두 시험(colloquium doctum)을 통해 신청자의 신학적 건전성, 생활의 경건성, 개혁신교회 사역과 활동에 대한 이해와 감사 정도를 판별한다. 총회감독이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노회의 승인과 총회감독의 확인을 얻어야 통과된다.

5. 합격한 신청자는 필요에 따라 즉시 청빙 가능한 목사로 선포된다. 더 이상의 시험이나 구두시험은 필요하지 않다.

(1984 총회회의록 채택, 642-43쪽;

2019 총회회의록, 783쪽)

## F. 필요성의 결정

1. 총회는 목회자후보위원회에 지시하여 그 위원회가 타교단 목사를 청빙함에 관하여 카운실과 노회에 권고할 때에 그리고 타교단 목사의 요청에 따라서 그들이 본 교단에서 청빙받을 수 있음을 공표할 때에 타교단 목사의 “필요성”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지시한다.
2. 총회는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교단가입절차’ (3부, C, 1)에서 정한 ‘필요성’ 항목을 검토하도록 요구한다.

(2019 총회회의록, 783쪽)

## G. 본 교단과 교류하는 이웃교단 목사들과 합동 사역

본 교단과 교류하는 이웃 교단의 목사들은 각각 자기 교단 안에서 공동사역을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본 교단에서 청빙되어 사역할 수 있다. 이런 조치는 노회의 승인과 총회감독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이들이 본 교단에서 사역해야 하는 구체적인 필요성이 입증돼야 하며 연금기금과 관련된 제반 조치가 목사의 교적을 둔 이웃 교단의 정책에 부합하여야 한다.

본 교단과 교류하는 이웃교단의 목사로서 본 교단에서 사역하는 타 교단 목사에게도 본 교단의 사역 기간 중 노회에 파견되거나 노회 위원회 사역에 참여할 권리가 주어진다. 이러한 대표성 및 참여의 권리는 노회 안에서만 유효하다.

본 교단 소속 목사가 본 교단과 교류하는 이웃 교단 교회와 본 교단 교회에서 공동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본 교단은 예외적으로 본 교단 소속 목사가 타 교단 교회에 청빙받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1997 총회회의록, 663쪽)

비고: 제 8조 G, 보칙의 수정안은 2021년 총회에서 채택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이 수정안은 본 교단과 교류하는 교회들을 정의하는 단어를

denominations in ecclesiastical fellowship에서 denominations in communion 으로 바꾸는 것으로 내용의 수정이 아니라 형식상의 사소한 수정입니다. 그러나 한국어 번역으로는 ‘이웃 교단’으로 하였으므로 수정 전과 후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1997 총회회의록, 663쪽)  
(2021년 총회회의록, \_\_ 쪽)

## 제 9조

목사를 청빙할 때, 카운실은 노회를 대표해서 교단차원의 규칙 준수여부를 감독하는 노회 카운슬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목사를 청빙하는 청빙서에는 해당 교회 카운실과 노회 카운슬러가 함께 서명해야 하며, 노회 카운슬러는 그 경과를 노회에 보고한다.

## 제 10조

a. 목사 후보를 안수할 때는 청빙교회의 노회와 총회감독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노회는 총회감독의 참석 하에 그의 교리와 삶을 총회 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안수 예식은 집례하는 목사가 후보자에 대한 안수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b. 목사의 취임은 청빙 교회의 노회나 노회 상임위원회 (interim committee)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취임하는 목사는 그의 전 소속교회 카운실과 노회가 작성한 그의 교리와 생활이 건전하다는 추천서를 사전에 해당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 보칙 참조

## 제 10조 보칙

### 목사 후보자와 관련된 과정의 규칙

1. 후보자에 대한 청빙서는 노회의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청빙의 성격이 잠정적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2. 안수를 받는 날짜는 후보자가 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공식 발표되어야 한다.
3. 후보자는 공중예배 시간에 노회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회가 지정한 성경본문을 가지고 설교해야 된다. 이 예배는 가급적 노회 모임을 앞둔 주일에 후보자가 청빙 받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 좋다.
4. 노회는 후보자의 설교문 사본을 총회감독과 노회 총대에게 제공해야 한다.
5. 노회가 지정한 본문의 설교 외에 후보자는 두 개의 다른 설교문을 노회 설교 심사대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두 설교 모두 신학생 시절에 행한 본인의 설교의 본문으로, 하나는 성경을 본문으로 하고 다른 하나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중 한 주일 본문을 다룬다. 성경본문은

구약과 신약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때 신학교에서 설교 연습이나 수업 중 평가받은 설교문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975 총회회의록, 90쪽)

6. 노회가 요구하는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총회가 청빙 후보자로 발표한 것 자체가 해당 후보가 목사청빙자격을 충족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안수를 위한 심사 과정에서 노회는 더 이상의 심사를 할 필요가 없다.

(1978 총회회의록, 24쪽)

(2009 총회회의록 수정, 583쪽)

7. 네 명의 노회 총대를 시험관으로 지명하여야 한다. 두 명은 설교 심사대표로 설교의 전체가 행해지는 현장에 참관하여야 하며, 다른 두 명은 노회 석상에서 시험을 주관한다.

8. 총회는 노회의 시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채택한다:

a. 소개: 노회의 시험관은 후보자를 노회에 소개한다.

b. 시험은 다음과 같은 세 종류의 주제를 포함한다:

### 1) 실천신학 (시간제약 없음)

a) 노회 시험관은 후보자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사역에 관한 헌신도, 현 시대에 사역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 교회에 대한 충성심 및 기타 관련 사항 등을 묻는다.

b) 총회감독들과 노회 총대들은 추가 질문의 기회를 가진다.

c) 다음 순서로 넘어갈 것인지에 대한 동의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 2) 설교 평가

a) 후보자 앞에서 설교 심사평가를 발표하여야 하며, 또한 예배를 인도하는 자세에 대해서도 언급하여야 한다.

b) 설교와 설교전달 방법에 대한 추가 질문이 허용된다.

c) 다음 순서로 넘어갈 것인지에 대한 동의안이 총회감독의 동의와 함께 통과되어야 한다.

### 3) 성경 및 신학적 입장 (후보 1인당 최소한 30분)

a) 시험관은 후보자의 성경 및 신학적 판단력, 실력 및 건전성을 질문한다.

b) 추가 질문의 기회가 제공된다 (시간제약 없음).

c. 목회사역을 인허하는 절차:

- 1) 해당 목사를 받아들임에 관한 동의안이 통과되면, 집중토의 (executive session)에서 심의한다.
- 2)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린다.
- 3) 총회감독은 회의장을 떠나서 추천여부를 준비한다.
- 4) 노회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한다.
- 5) 총회감독은 그들의 의견을 문서로 제출한다. 그 문서는 그들이 노회의 결의에 동의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포함한다.
- 6) 총회감독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노회와 총회감독은 일치된 결론을 얻기 위한 토의를 진행한다.
- 7) 일치된 결론에 도달할 수 없으면 그 안건은 자동적으로 총회로 회부되어 최종 결정을 받게 된다.

(1972 총회회의록, 44-46쪽)

**제 11조**

목사의 소명은 성경을 선포하고, 설명하며, 실제 생활에 적용하여서 성도를 모으고 구비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제 12조**

a. 교회의 목사로 섬기는 말씀의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성례를 베풀고, 공예배를 주관하며, 청소년들에게 교리문답을 가르치며, 성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봉사하도록 훈련시킨다. 목사는 다른 직분자와 더불어 교회와 동료 직분자를 감독하고 교훈과 징계를 행하므로 모든 것이 품위있고 질서대로 행해지도록 살피며, 성도들을 목양하며, 복음전도 사업을 추진하고 참여하며, 구제사역에 힘쓴다.

b. 목사로서 (1) 선교사역이나 군목, 또는 특별한 과도기 사역에 종사하거나 (2) 총회에서 직접 임명되었거나 (3) 총회에서 인준한 사역자는 지역교회로부터 정규 절차에 따라 청빙을 받는다. 이때 지역교회는 노회와 총회의 특정 위원회와 협력하여 처리한다.

c. 목사는 말씀의 사역자의 소명과 직접 관련된 다른 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다. 그러나 청빙교회는 그 다른 일이 목사의 소명과 일치된다는 것을 사전에 노회가 납득하도록 보여주어야 하고, 이 일에 총회감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 12조c항 보칙 참조

## 제 12조 c보칙

### 헌법 제12조 c항을 특정 직무와 상황에 적용하는 규칙:

a. 목사를 청빙하는 교회는 새로운 목회의 사역에 관하여 노회의 사전 승인과 총회감독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다음 서류들을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청빙 교회가 협력기관과 의논하여 적절하다고 결정한 직책의 공식 직무설명서 (목적, 임무, 자격요건 등)

2) 필요시 협력기관과 상의하여 작성한 목사의 청빙교회에 대한 보고 의무와 청빙교회의 감독 개요를 포함한 목사가 청빙 교회의 감독을 받을 것이라는 증거

3) 말을 직책이 목사로서의 소명과 일치한다는 증거

4) 만약 노회가 “영적이며 목사의 소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직책”으로 발표한 직책이 공석이 되었을 경우, 청빙에 앞서 이 직책의 성격을 헌법 제11-14조에 비추어 검토해야 한다.

b. 새로운 사역으로서 즉시 총원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일 경우, 청빙교회 (및 특정한 교단 기관)는 노회 상임위원회로부터 임시허가를 받아서 우선 처리하고, 노회 및 총회감독의 사후 승인 및 동의를 받을 수 있다. 임시 승인을 못 받은 상태에서 자기의 사역을 지속하고 싶으면 그 목사는 명예사직(honorably released)하고 헌법의 규칙에 따라 재청빙될 수 있다. (헌법 제14조 e항 참조)

c. 목사를 특별목회로 (Chaplaincy Ministries, 원목이나 군목 등) 청빙하기 앞서서 청빙교회는 본 교단의 특별목회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73 총회회의록, 56쪽; 1998 총회회의록 개정, 391쪽)

d. 노회의 시찰회는 청빙교회가 어떻게 이러한 목사들을 감독하는 것과 목사가 교회에 대해 업무를 제대로 보고하는 지를 매년 조사해야 한다. 시찰회는 교회의 감독과 목사가 보고 규정이 위반될 경우 이를 노회에 보고해야 한다.

(1978총회회의록, 47-48쪽)



## 제 13조

a. 목사는 그를 청빙한 교회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며, 자신의 교리, 삶과 업무수행에 관하여 청빙교회의 감독을 받는다.

b. 목사의 사역이 청빙한 교회 외에 있을 경우, 청빙교회가 관련된 교회나 기관과 협조하여 해당 목사를 감독한다. 청빙교회의 카운실은 목사의 교리와 삶에 대하여 우선적인 책임을 진다. 관련 교회와 기관은 사역의 감독에 대하여 우선적인 책임을 진다.

- 제13조 b항 보칙 참조

c. 본 교단 외의 다른 교회에서 목사로 청빙받을 경우, 목사는 노회의 승인과 총회감독의 동의를 얻은 후에 총회 규정의 절차를 따라 그 교회에 임시적으로 타교단 시무(loaned) 할 수 있다. 이 때에 그 목사의 구체적 직무는 그 교회와의 협의 하에 조정되지만, 그 목사의 교리와 삶의 감독은 그가 속한 본 교단 교회가 관할한다.

- 제13조 c항 보칙 참조

### 제13조 b항 보칙

타교단 교회와 공동으로 사역하는 목사를 감독하는 본 교단 소속 카운실과 기관이 해당 목사의 교리, 삶, 직무에 있어서 중대한 결함을 발견했을 때에는 그 목사의 지위와 미래에 영향을 끼칠 결정을 하기 이전에 협력하는 교회에 문서로써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해당 목사의 직무가 변경되거나 축소되므로 그 지위에 변화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관련 기관은 협력 교회나 기관에 동일하게 공식적으로 알려야 한다.

북미주 개혁신교회 총회의 직접적인 감독 아래 있지 않은 기관에서 사역을 하는 목사에게 관한 협력 감독은 교회헌법 제12조 c항 보칙과 1998년 총회가 채택한 특별목회(chaplains)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처리한다 (1998 총회회의록, 391-92쪽, 457-60쪽).

원목과 같이 특수목회를 담당하는 목사의 교리와 삶을 감독하는데 더욱 수월하거나 효과적일 경우에는 해당 목사의 교적을 다른 교회로 옮길 수 있다. 목사의 교적 변경은 지역교회의 통상적인 청빙절차를 따라야 하며 해당 카운실와 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02 총회회의록, 469-70쪽)

(2017 총회회의록, 624쪽)

## 보칙, 제13조 c항

### 교회헌법 제13조 c항에 관한 규칙

본 교단 소속이 아닌 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목사는 임시로 타교단 교회에서 사역할(loaned)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그는 아래 규칙에 따라 본 교단 소속 목사직을 유지한다:

- a. 본 교단 목사의 사역을 요청하는 교회는 개혁 신앙을 추구하며, 본 교단이나 다른 개혁교단에 가입할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거나, 혹은 이미 개혁 교단에 속해 있으면서 개혁 신앙을 굳게 지켜 나가야 한다.
- b. 초교파 교회에서 사역하려는 목사는 해당 교회를 본 교단에 가입시키거나 혹은, 적어도 북미주 개혁교회와 유사한 다른 개혁교단에의 가입을 고려하도록 권하는 기회로 여긴다.
- c. 목사의 직무는 영적인 성격이고 목사의 소명과 직결되므로, 이러한 직무는 직분자서약(Covenant for Officebearers)에 서명했을 때 요구되는 본 교단의 신앙과 삶에 관한 목사의 헌신에 배치되지 않아야 한다.
- d. 해당 목사는 자신이 속한 교회의 노회와 총회감독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역을 요청한 타 교단 교회가 본 교단 소속의 이웃노회 산하 교회 근처에 있다면 해당 노회의 승인도 필요로 한다.
- e. 목사를 타 교단에 파송하는(loaned)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필요하다면, 노회와 총회감독의 허락을 받아 매년 2년 미만씩 그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
- f. 해당 목사가 징계를 받게 될 경우, 그 목사가 사역하는 타 교단 교회는 그의 직무를 정지시킬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 목사의 정직과 면직은 본 교단에 한한다.

g. 본 교단 연금제도의 혜택을 유지하려면 목사 본인이나 그가 사역하는 타 교단 교회에서 그 목사의 부담금을 계속 납부해야 된다. 이 때 목사연금 기금위원회는 타 교단에 파견 나간 목사의 추가 부담금 액수를 정한다.

(1976 총회회의록, 33-34쪽)

(2011총회회의록, 872쪽)

## 제 14조

a. 목사는 카운실의 동의없이 자신이 속한 교회를 떠나 타교회로 가서는 안된다.

b. 본 교단의 목사가 타 교단에서 사역하기 위하여 본 교단으로부터 사임하고자 할 때는, 사임하는 목사에게 대해서 규정한 절차를 따라 노회가 선언한 뒤에야 교단을 떠날 수 있다. 이 때에도 총회감독의 동의가 필요하다.

- 제14조 b항 보칙 참조

c. 목사는 합법적으로 청빙을 받은 후 그 직분을 임의로 버려서는 안된다. 그러나 노회의 승인과 총회감독의 동의를 얻을만한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목회직이 아닌 다른 직업을 갖도록 그 직분에서 해직될 수 있다.

- 제14조 c항 보칙 참조

d. 목사는 목회직이 아니라고 노회가 판단한 직업을 택하였을 때, 그 판단이 있는 지 일 년 이내에 해직될 것이다. 노회에서 판단을 내릴 때에는 총회감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 목사 직분으로부터 해직된 전직 목사는 그 해직을 결정한 노회의 승인과 총회감독의 동의를 얻어야 청빙 받을 자격이 있다고 선언된다. 해당 노회는, 총회감독의 입회하에, 과거의 해직과 목회를 하려는 새로운 소망에 관련된 상황을 점검하는 인터뷰를 시행하여야 한다. 그가 교회의 청빙을 받게 되면 그는 목사 안수를 다시 받아야 한다.

- 제14조 e항 보칙 참조

## 14조 b항 보칙

### 본 교단을 사임하는 목사에게 관한 선언

a. 다른 교단 교회에서 설교사역을 하기 위하여 안수를 받으려고 본 교단을 떠나는 목사에게 관련하여, 총회는 산하 교회 및 노회에게 1978년 총회가 채택한 “모든 사직의 경우에 있어서 총회대표의 동의를 얻은 타당한 면직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선언을 참고하라고 권하며,

동시에 이 선언은 이러한 상황을 처리하는데 상당한 융통성을 부여한다는 점을 인식하라고 지시하였다. (1978 총회회의록, 73쪽 참조)

b. 총회는 교회와 노회가 결정을 할 때에 목사가 사임을 결심하고 떠나기까지 그가 취한 태도와 정신을 고려하라고 지시했다. (어떤 상황은 면직에 해당하고 또 다른 상황은 단순한 해직에 해당한다.)

c. 총회는 교회와 노회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각 경우마다 독특한 조건과 상황을 주의 깊게 인식할것 (예를 들면, 절차를 따른 공식적인 사임인지 아니면 사실상의 사임인지 여부 등).

2) 사임하는 목사가 사임을 결심하기까지 그가 취한 행동과 정신을 고려하여 사임하는 목사의 지위에 대하여 선언한다. 선언에는 다음 중 하나를 반영한다:

a) 사임하는 목사가 명예사직된다. (honorably released).

b) 사임하는 목사가 사직된다 (released).

c) 사임하는 목사가 해직된다 (dismissed).

d) 사임하는 목사가 면직된다 (deposed).

주: 정년 퇴직하는 목사와 구별하기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임하는 목사는 본 교단 안에서 목사의 명예나 직함을 보유하지 않으며 본 교단과 아무런 공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헌법 제18조 b항 참조)

d. 총회는 교회와 노회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다음 원칙들을 사용하여 심의할 것을 권고하였다:

1) 교회를 분열시키는 행동은 임직을 통해 맡겨진 성스러운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에 고통과 파괴를 가져오는 것이다.

2) 교회와 노회는 선언 속에 회복과 상호 화해의 가능성을 명시하여야 한다.

(1993 총회회의록, 581-582쪽)

## 14조 c항 보칙

제14조 b항 보칙은 또한 14조 c항 보칙에도 적용되는 바, 특히 목사가 징계 중이거나 징계를 피하기 위해 사임할 때 그러하다.

## 제14조 e항 보칙

면직된 목사의 복직을 다루는 제84조 보칙의 규정은 징계에 의하여 사임했거나 징계를 피하기 위하여 사임했던 목사가 제14조 e항에 의거하여 재안수를 희망할 때에도 적용된다.

(2016 총회회의록, 866쪽)

## 제 15조

각 교회는 카운실를 통해 소속 목사에게 적당한 생활비를 지불해야 한다. 예외로 노회의 허락 하에 목사가 교회와 동의하여 다른 직업을 갖고 이를 통해 일차적 또는 보조적 수입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예외는 목사를 부양할만한 충분한 자원이 없는 교회로 제한된다.

- 제 15조 보칙 참조

## 15조 보칙

### "적당한 생활비"의 정의

교회 목회자에 대한 적당한 생활비에는 충분한 월급, 건강보험, 주택, 본 교단의 연금 부담금, 연장교육을 위한 기금, 그리고 사역과 관련된 기타 사항을 포함한다.

(2004 총회회의록, 611쪽)

### 교회 외의 직업으로부터 생활비를 받는 목사를 둔 교회에 관한 규칙

1. 교회는 목사에게 교회 사역에 사용된 시간에 비례한 보상체계 (compensation package)를 제공할 책임을 가진다 (통상 48시간 근무를 전임으로 간주한다). 보통 급여 일체라 함은 최저임금, 부가 혜택 및 주거비를 포함한다.
2. 보상체계에는 근무시간 비례 의료보험 수당을 포함하므로 목사는 본인과 가족을 위한 충분한 의료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3. 교회가 제공하는 목사관의 가격을 보상체계의 일부 혹은 전부로 포함시킬 수 있다.
4. 목사는 교회 사역에 헌신하는 시간에 비례해서 목사 연금기금이 제공하는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액 연금혜택을 받으려면 목사 연금기금 부담금을 전액 납부해야 된다.

5. 교회사역 이외로 하는 고용의 성격과 그 일에 종사하는 시간의 양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된다. 교회사역과 기타 직업에 종사하는 시간의 합계가 주당 6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987 총회회의록, 572쪽)

## 제 16조

목사가 합당한 사유로 교회 사역을 임시휴직 (temporary leave of absence)하려면 카운실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그 카운실은 계속해서 그 목사를 감독한다. 모든 임시휴직의 경우, 목사는 그 사역지로 돌아와야 한다.

## 제 17조

a. 목사가 은퇴나 징계가 아닌 다른 합당한 이유로 인하여 교회사역에서 사직 (released from ministry) 하려면 목사나 혹은 카운실이 청원할 수 있고, 또는 양자가 같이 청원하여 사직될 수 있다. 이러한 사직은 총회의 규칙에 따라 노회의 승인과 총회감독의 동의가 있을 때 유효하다.

- 17조 a항 보칙 참조

b. 카운실은 사직한 목사의 생활비를 노회가 승인한 방법으로 승인한 기간 동안 보장해야 한다.

c. 교회사역으로부터 사직된 목사는 향후 2년간 교회 청빙을 받을 자격이 있고, 그 후에는 노회가 총회감독의 동의를 얻어 목사직에서 사직된 것을 선언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노회는 총회감독의 동의를 얻어 청빙 유효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d. 어떤 경우에는, 사직된 목사의 평가 과정을 거친 뒤 노회는 해당 목사가 청빙될 자격을 갖추었다고 공포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노회는 총회감독의 동의를 얻어 목사직에서 사직된 것을 선언하여야 한다.

## 제 17조 a항 보칙

### 교회에서의 교회에서 해고된 목사 사직에 대한 규정

a. 해고된 목사가 새로운 청빙을 받기 전에 평가와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노회가 판단할 때, 노회는 사직을 공포할 때에 사직된 목사가 청빙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어야 한다.

1) 노회는 세 명 이상으로 감독 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목사가 목회를 위해서 개인적이고 정서적인 준비가 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계획을 세우게 한다. 한 명 또는 다수의 평가자가 노회와 노회의 감독 위원회가 동의를 얻어 이 평가를 수행한다. (목사-교회

지원부에서 적합한 평가자를 추천할 수 있다.) 노회는 평가 비용과 개인 상담비용을 어떻게 충당할지 결정한다.

a) 평신도와 목사로 구성된 위원회에 해당 교회의 카운실의 일원을 포함시킬 수 있다.

b) 이 위원회는 노회 상임위원회와 상의하여 해당 목사로부터 기대할 것을 작성하고 정해진 목표로 향하는 과정을 관찰한다. 드러난 문제는 카운실과 노회가 제기한 관점에 따라서 그리고 해당 목사와 논의하여 결정한다.

c) 위원회는 매회 정기 노회에 경과를 보고한다.

d) 평가자(들)로부터 보고를 받은 위원회는 해당 목사의 청빙 자격에 관하여 노회에 권고한다.

2) 해당 목사는 아래와 같이 평가와 도움의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a) 해당 목사는 평가자들이 작성한 세부사항과 권고가 포함된 보고서에 동의하여야 한다.

b) 위에서 규정한 평가 외에 해당 목사는 자신과 감독 위원회가 동의하고 노회가 요구하는 치료전문가와 만나는 어떠한 개인적 상담에도 참여하여야 한다.

3) 감독 위원회의 권고에 근거하여 노회는 해당 목사가 청빙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

4) 만약 노회가 해당 목사가 청빙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선언할 경우, 노회는 총회감독의 동의를 얻어서 해당 목사를 목사직으로부터 사직시킨다.

5) 한 교회의 사역으로부터 해직된 목사는 노회의 승인을 얻은 후에 평가 기간 도중에 자신의 교적과 목사 교적증명을 동일한 노회 내의 다른 교회로 이적할 수 있다. 노회가 해당 목사가 청빙을 받을 수 있다고 선포할 경우, 해당 목사의 목사 교적증명을 가지고 있는 카운실은 그가 청빙받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6) 한 교회의 사역으로부터 해직된 목사는 노회의 승인을 얻은 후에 결별을 확인시킨 노회가 자신의 청빙될 수 있음을 선포한 후에 자신의 교적과 목사 교적증명을 다른 노회 내의 교회로 이적할 수 있다. 해당 목사의 목사 교적증명을 가진 카운실은 그가 청빙받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b. 목사와 결별한 교회가 다른 목회자를 청빙하기 전에 평가하고 도움을 받을 시간을 가질 것을 노회가 결정할 경우, 노회는 목사가 교회와 결별할 때, 그 교회가 다른 목회자를 청빙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명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카운실이 속한 노회는 카운슬러와 함께 최소한 다른 두 명으로 구성된 감독 위원회를 임명하여 평가 과정을 계획하고 관찰하도록 한다.

- 2) 해당 교회의 카운실와 함께 감독 위원회는 가능하면 현상황에 적합한 전문적인 임시목사를 선임하고 목표를 정한다. (목사-교회 지원부는 그러한 목사를 찾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 3) 감독 위원회는 매회 정기 노회에 이 과정을 보고한다.
- 4) 감독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노회는 해당 교회가 다른 목회자를 청빙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최종 결정한다.

(2003 총회회의록, 623-24쪽)

비고: 카운실와 노회는 1998년 총회에서 채택되고 (1998 총회회의록, 392-396쪽) 2010년 총회에서 수정된 (2010 총회회의록, 915-16쪽) “해직된 목사”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라.

## 제 18조

- a. 목사가 은퇴할 연령이 되었거나 또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 질환으로 목사직분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은퇴할 수 있다. 은퇴는 카운실와 노회의 승인을 거쳐 총회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 b. 은퇴한 목사는 말씀의 사역자로서의 지위와 함께 교회가 부여한 사역을 공식적인 수행할 권위를 갖는다. 은퇴 목사의 감독은 다른 교회로 적을 이전하지 않는 한 자신이 마지막으로 섬긴 교회에 둔다. 은퇴 목사의 감독교회는 총회 규정에 따라 해당 목사와 그 부양가족이 품위있게 생활할 비용을 지원할 책임을 진다.
- c. 만일 은퇴 사유가 사라지게 되면, 해당 은퇴목사는 자신의 은퇴를 결의한 카운실로 하여금 노회에 그가 다시 목회사역에 청빙받을 자격이 있음을 공포해 주도록 청원할 수 있다.

- 제 18조 보칙 참조

## 제 18조 보칙

### 은퇴

목사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66세에 은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011 총회회의록, 813쪽)

은퇴목사의 감독은 (해당 목사가 자신이 섬기던 교회의 멤버로 남아있거나 은퇴가 잠정적일 경우는 예외로) 본인의 요청에 따라 은퇴 후에 자신이 등록한 교회로 옮길 수 있다.

은퇴 목사의 감독을 옮길 경우, 은퇴 목사가 마지막으로 사역한 교회의 카운실이 은퇴목사가 옮기려는 교회의 카운실에 해당 은퇴 목사의 감독을 맡아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1968 총회회의록, 69쪽)

## 조기은퇴 방법

목사는 노회의 승인을 얻어 55세에 조기 은퇴할 수 있다. 이 경우 은퇴 목사는 2011년도 총회에서 채택된 규정에 따라 감액된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1993 총회회의록, 579쪽)

(2011총회회의록, 813쪽)

## “사역의 공식적인 수행”

1) 특별한 사역의 수행, 예를 들어서 말씀의 설교, 성찬의 집행, 회중을 위한 축도, 새 임직자에 대한 안수, 그리고 교회 멤버를 받아들이거나 내보냄 등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사역이며 또한 교회에 맡기신 사역이며, 교회 안에서는 모든 직분 중에서 안수받은 지도자들에게만 맡기신 사역의 일부이다.

2) 그러므로, 역사가 깊고 조직된 교회가 안수받은 목사나 전도목사를 충분히 후원할 수 없어서 청빙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목회사역들이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3) 이러한 목회의 사역은 주님과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상징하며 이 관계를 강화시킨다. 하나님의 백성을 성장시키기 위해 주님께서는 이러한 거룩한 사역을 지도자들에게 위임하셨다. 그러므로 이러한 목회사역은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올바르게 규정되어야 한다.

(2001 총회회의록, 504쪽)

## 제 19조

교회는 말씀의 사역자를 양성하는 신학교를 유지한다. 이 신학교는 총회가 지명한 이사회를 통해 총회의 관할을 받으며 총회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 제 20조

신학교 교수로 지명된 말씀의 사역자의 직무는 신학생을 말씀의 사역자로 훈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설하고, 이단과 오류에 대항하여 건전한 교리를 옹호하는 것이다.

## 제 21조

교회는 성도들을 권하여 말씀의 사역자가 되도록 지망하게 하며, 노회와 협력하여 재정지원이 필요한 자들을 도와야 한다.

- 제6, 7, 8조 보칙 참조

## 제 22조

총회규정에 따라 권한을 받은 신학생은 공예배에서 권면할 수 있도록 허락받는다.

- 제 20조 보칙 참조

## 제 22조 보칙

### A. 설교 인허증에 관한 규칙

1. 목회자후보위원회는 아래의 규정에 한하여 예배를 집례할 인허증을 부여할 수 있다:

- a. 말씀의 사역자가 되기 위하여 신학교의 학생으로 등록한 사람
- b. 성경, 신학, 그리고 설교 과목을 포함한 신학교 기말 시험을 마치고 1학년을 수료한 사람

2. 목회자후보위원회는 해당 신학생들이 아래의 사항을 만족시키기 전에 설교 인허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 a. 그들이 본 교단 교회의 성실할 성도인가 확인한다.
- b. 그들이 사역에 필요한 영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는가, 본인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사역을 준비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았다고 생각하는가를 확인한다.
- c. 그들이 본 교단에서 사역할 것인가 확인한다.
- d. 그들이 타인을 가르칠만한 충분한 성경지식이 있는지, 특히 개혁신학의 원리에 대한 지식이 충분한지 확인한다.
- e. 그들이 적절하게 말하며 교회에 덕을 세울만한지 확인한다. 이러한 정보를 신학교 교수로부터 얻을지 또는 신청자를 심사함으로써 얻을지 여부는 목회자후보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목회자후보위원회는 대학원 이후 과정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인허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사항을 유념해야 한다.

- a. 이러한 기회는 대학원 석사 이후 과정에 재학하면서 본 교단에서 사역하겠다는 분명한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부여한다.
- b. 인허증의 연장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
- c. 1년 이상의 연장은 첫 1년 말에 신청자가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에 가능하다. 두 번째 연말에 연장을 요청할 경우, 직접 대면하여 두번째 시험을 치루어야 한다. (본 규칙 3의 c 후반부는 미국이나 캐나다 밖에서 수학하는 대학원생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목회자후보위원회는 아래의 경우 인허를 취소할 수 있다.

- a. 신학공부를 마쳤지만 말씀사역에 들어가는 단계를 밟지 않는 사람
- b. 신학공부를 중단했거나 신학교 등록을 하지 않은 신학생

(1936총회회의록, 46-48쪽)

(2004 총회회의록 수정, 619-20쪽)

(2010 총회회의록 수정, 909쪽)

## B. 외국학생에 대한 인허증 교부

- 1. 건전한 개혁신학교의 성실한 교인이어야 하고 본 교단 신학교의 정규 또는 특별 학생이어야 한다.
- 2. 본 교단 신학교에서 충분한 연수를 받은 학생으로서 교수가 그의 학력과 영어 회화 능력이 우수하다고 추천하는 학생
- 3. 본 교단 신학교에서 요구하는 설교학 과정을 이수했거나 다른 학교에서 이와 동등한 과정을 수료한 학생으로서 설교학 신학교수가 그의 권면하는 능력을 인정하는 학생
- 4. 인허 요청은 목사후보생위원회에 하도록 한다.
- 5. 신청자 면접은 목사후보생위원회 또는 목사후보생위원회가 지명한 사람이 해야 한다.
- 6. 칼빈 신학교의 주선을 통해서 학생은 권면해야 한다. 학생 본인 스스로 주선해서는 안 된다.
- 7. 인허증은 학생의 재학기간 중에 한하여 유효하다. 인허증의 연장은 특별신청에 의한다.

(1961 총회회의록, 36쪽)

## C. 전도목사 (Commissioned Pastors)

## 제 23조

- a. 전도목사의 임무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말씀의 설교, 성례 집행, 교회교육, 목양, 전도 그리고 신자들의 제자훈련과 불신자의 신앙을 위해 필요한 사역들이다.

- 제 23조 a항 보칙

- b. 전도목사는 카운실의 직접 감독을 받으며, 특히 그의 사역에 관하여 다룰 때는, 카운실에 참석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 c. 전도목사는 소속교회에서 인정받는다. 보통, 카운실서의 역할은 그가 전도목사로서 담당한 사역으로 제한된다.

## 제 23조 a항 보칙

전도목사의 직분은 2001년 총회에서 채택한 지침에 해당하는 다양한 사역에 적용될 수 있다.

전도자의 직분은 목회의 연장과 같은 성격을 지닌다. 전도자는 새로운 회중과 일하고 조직교회의 사역이 확장된 특별한 분야에서 일함으로써 목회지도력을 확장한다. 즉, 젊은이 사역, 교육, 목회적 돌봄, 예배 및 전도를 포함하며 또한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기존의 규정과 함께 다양한 목회영역에 대하여 전도자 직책에 대한 적용을 확대함으로써, 교회는 직분의 종류를 늘리는 대신 교회의 다양한 목회적 직책을 인정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직책은 특수목사(원목, 군목), 교육목사, 청소년 목사, 교구목사 등 직책에 따른 고유한 명칭으로 불릴 수 있다.

(2001 총회회의록, 506쪽)

[비고: 이 직분은 2001년에는 전도자로 불렸다. 이 명칭은 2003년 총회에서 전도목사로 변경되었다가, 2012년 총회에서 전도목사로 바뀌었다.]

모든 전도목사 직책은 이 직책이 2001년 총회에서 채택한 지침에 부합하는지 확인한 총회감독의 동의와 함께 노회에서 인허받아야 한다. 모든 전도목사는 시험을 통해 자신이 부름받은 사역의 직무를 잘 수행할 능력이 있음을 드러내야 한다.

전도목사 안수를 위한 시험은 전도목사 핸드북에 기록된 대로 총회가 정한 지침에 따라 행해야 한다.

총회에서 정한 지침과 규정을 반영하는 핸드북은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에는 시험 절차, 직무설명서 (job descriptions)의 작성, 전도목사로 안수받을 사람이 갖춰야 할 표준과 자격을 정한다.

(2019 총회회의록, 783쪽)

특수목회 전도목사의 직무설명서 작성은 특수목회사역부와의 협의를 통해 승인받아야 한다. 여기서 의무, 성품, 말씀의 사역자로 안수받을 때 적용할 일반 원칙들은 제 23조 원목의 안수 항목을 준용한다.

(2003 총회회의록, 613쪽)

## 제 24조

- a. 전도목사는 전도목사 핸드북에서 설명된 대로 총회가 승인한 해당 규칙을 따라, 노회의 허락과 총회감독의 승인 얻은 후에만 조직 교회의 단독 혹은 담임 목사직을 맡을 수 있다.

- 제 24조 a 보칙 참조

- b. 전도목사는 말씀의 사역자로 안수받는 절차를 마치도록 노력할 것이 청빙조건에 포함된 직책에 청빙받을 수 있다. 이러한 청빙조건과 이에 따른 학습계획은 노회의 허락과 총회감독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 24조 b 보칙 참조

- c. 전도목사가 그의 정한 사역 범위나 직무를 넘어 사역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카운실와 노회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 제 24조 c 보칙 참조

- d. 전도목사의 해임과 전도목사 직책의 소멸은 총회가 승인한 절차를 따라, 직무를 승인한 노회의 허락을 얻은 후에만 가능하다.

- 제 24조 d 보칙 참조

- e. 전도목사가 은퇴연령이 되면, 노회의 판단에 따라, 은퇴 전도목사의 호칭을 줄 수 있다.

- 제 24조 e 보칙 참조

## 제 24조 a항 보칙

전도목사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조직교회의 단독 목사 직책을 섬길 수 있다. 이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는 2019년 이전에는 제 23-b, 23-c, 23-d 조에서 언급했지만, 현재는 전도목사 핸드북에서 설명한다.

노회는 헌법 제 24조 b항에 따라, 말씀의 사역자가 되는 자격을 갖추도록 진행하는 학습계획을 따를 것을 조건부로 안수를 허락할 수 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전도목사가 개척교회 혹은 조직교회에서 단독으로 목회하려면, 그는 노회와 협력하여, 노회에서 채택하고 목회자후보위원회에서 승인하여 전도목사 핸드북에 설명된 대로, 교단차원의 안수를 받기 위한 맞춤형 학습계획을 개발하고 수료하여야 한다.

#### 제 24조 b항 보칙

많은 경우, 전도목사는 제 6조에서 기술한 필수 교육을 포함한 절차를 따라 말씀의 사역자로 안수받기를 원하거나 과정을 밟도록 격려받는다. 모든 다른 상황의 전도목사가 말씀의 사역자 후보로 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이는 목사와 교회에 유익하다. 노회와 총회감독의 승인을 얻은 지역의 협력사역은 학습계획 수립 능력을 고려하고, 갱신가능한 '임기제 청빙' 방식으로 전도목사의 학습계획의 진전을 가져올 수 있다.

#### 제 24조 c항 보칙

지역 회중의 바깥에서 사역하는 전도목사의 경우 전통적인 부르심과는 다른 길을 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전도목사의 경우에 관하여는 전도목사 핸드북에서 설명한다.

#### 제 24조 d항 보칙

이런 다양한 상황 속에서, 총회는 승인받은 전도목사의 직책에 대해 결정하는 지침, 전도목사의 사임, 전도목사의 사직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총회는 또한 그의 사역을 완료하는 어떠한 전도목사에 대해서도 이에 대해 노회가 적절히 선언하도록 지도한다. 이러한 지위에 관한 지침과 선택은, 헌법 제 14-b, c, 2 보칙과 전도목사 핸드북에 있다.

#### 제 24조 e항 보칙

은퇴 전도목사는 노회의 판단 아래, 그가 은퇴하기 전에 안수 받아서 행하던 사역과 동일한 공식적 사역을 행할 권한을 유지한다. 은퇴 전도목사의 감독권은, 관련 노회의 허락을 받아 다른 회중으로 옮기지 않은 이상, 그가 마지막으로 섬김 교회에 남는다.

(2019 총회회의록, 783쪽)

### D. 장로와 집사

#### 제 25조

a. 장로와 집사는 카운실에서 지정한 제한된 임기동안 사역한다. 임기는 사역하는 지도자들의 연속성과 승계에 적합하도록 규정한다. 휴무하는 직분은 다른 사람이 계승한다. 지역교회의

형편과 유익 때문에 즉시 재선 자격을 주는 것이 적절하면 예외로 한다. 이와 같이 다시 선출된 장로와 집사는 재취임하여야 한다.

b. 장로는 목사와 더불어 교회에서 성도와 동료 직분자의 교리와 생활을 감독하며, 목회활동으로 조언과 훈계를 제공하며, 복음 전도에 참여하고 추진하며, 신앙을 수호한다. 교회의 목자로서 장로는 성도를 그리스도의 삶을 살도록 격려하고 지지한다. 장로는 또한 격려하고 가르치며 서로 책임을 지면서, 성도들이 성만찬에 감사함과 순종함으로 참여하도록 양육한다.

c. 집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성도들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며 봉사한다. 집사는 성도들이 자신들의 시간과 재능, 그리고 재물을 충실하게 사용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교회를 인도한다. 그러므로 집사는 구제, 공의, 그리고 화목을 이루는 단체와 사역에 지역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참여하도록 교회를 격려한다. 이러한 집사의 사역은 성경의 증거와 권고와 함께 행하여 말과 행동의 일치로 가져온다.

## II. 교회의 회의

### A. 일반규정

#### 제 26조

본 교단의 공식 회의는 카운실, 노회, 총회이다.

#### 제 27조

a. 각 회의는 그 자체의 성격과 영역을 유지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교회적인 권위를 행사한다. 카운실의 권위는 기초적(original)인 것이며, 상급 회의의 권위는 카운실로부터 위임(delegated) 받은 것이다.

b. 노회가 카운실에 대해 갖는 권위는 총회가 노회에 갖는 권위와 같은 것이다.

#### 제 28조

a. 이 회의들은 교회에 관한 일들만 처리하며, 그것들을 교회에 적합한 방식으로 다룬다.

b. 상급회의는 해당 교회에 공동으로 관련된 일들이거나 하급회의에서 처리할 수 없는 일만을 다룬다.

c. 하급회의에서 상회로 위탁된 사안은 노회와 총회의 진행규칙에 적합하게 제출되어야 한다.

## 제 29조

교회 회의의 결정은 신중히 고려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교회 회의의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 또는 교회헌법에 위배된다는 증거가 없는 한 확정적이며 구속력을 가진다.

## 제 30조

a. 불공정한 일이 행해졌거나 하나님 말씀 혹은 교회헌법에 위반된 결정이 내려졌다고 믿을 경우, 교회와 교인은 그가 속한 교회의 상회에 청원할 수 있다. 청원자는 청원의 방식과 시간에 관한 모든 교회 규칙들을 준수해야 한다.

b. 총회는 다른 청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확립시켜야 한다.

c. 청원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청원을 접수한 교회회의가 제30 조a항에서 규정한 내용과 상당히 유사한 해당 청원에 대하여 분명하게 처리하고 결정하지 않았다면, 서면 청원은 재판국 규칙 (Judicial Code)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 보칙 제30조 a-c항 참조

## 제 30조 a항 보칙

재판국 규칙을 적용하지 않을 때 헌법 제 30조 a항에 규정된 청원절차 규칙

### A. 카운실 (피청원자)의 결정 또는 조치에 불복하는 성도(청원자)가 청원하는 경우

1. **시효:** 결정이나 조치 발생 6개월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결정이나 조치가 계속되거나 반복해서 일어날 경우, 시효는 끝나는 시점에서 6개월 내로 조정된다. 청원자에게 합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노회는 6개월 경과 후에도 청원을 받을 수 있다.

2. **구두진술:** 노회가 청원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청원자와 피청원자는 사안에 대해 구두로 진술할 수 있다.

3. **노회의 조치:** 노회는 적법하게 제출된 청원을 빠짐없이 심의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노회는 노회 서기가 청원을 접수한 날로부터 1년 내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만약 노회가 1년 내로 결정하지 못할 경우 청원자나 피청원자는 노회의 결정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직접 총회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4. **총회에 청원:** 청원자와 피청원자는 노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총회에 청원할 권리가 있다.



## **B. 노회(피청원자) 결정에 불복한 성도 또는 카운실(청원자)가 총회에 청원하는 경우**

1. **청원시효:** 청원자는 결정 또는 조치 발생 90일 내로 제기해야 된다.
2. 통상적으로 청원이 총회에서 심의되려면 적어도 그 해 3월 15일까지 교단대표에게 제출해야 된다. 3월 15일 이후 접수되면 그 해 총회에서 심리할 수 없다. 그러나 교단대표가 건의할 경우 교단의 대표단 카운실이 그 해에 상정을 결정할 수 있다.
3. 통상적으로 청원은 총회 의사일정에 게재되지 않는다. 그러나 교단대표의 건의로 북미주 개혁신교회 중앙이사회(COD)가 청원에 대한 총회의 결정이 노회 차원을 넘어 중대한 파급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런 청원과 결정 또는 요약문을, 교단대표의 재량으로, 의사일정에 게재할 수 있다. 3월 15일 전에 접수했지만 결정 시한이 3월 15일 이후가 되는 경우, 교단대표는 피청원자와 의논해서 답변 내용을 인쇄해서 총회가 시작될 때 총대에게 배포하거나 아니면 그 청원을 다음 총회로 넘길 수 있다.
4. 청원자와 피청원자는 총회 자문위원회에 출석하여 각자의 입장을 설명할 권리가 있다. 청문요청은 교단대표에게 하며 교단대표는 이를 자문위원회 의장에게 보낸다.
5. 청원자와 피청원자는 총회에서 사건을 설명할 때 참석할 권리가 있으며, 자문위원회가 건의하고 총회가 승인할 경우, 총회 회의에서 각자의 주장을 설명하고 변호할 권리가 있다.
6. 자문위원회는 청원과 답변의 내용을 분명하고 적절하게 총회 대표들에게 설명해야 된다.
7. 일정에 게재되지 않은 청원과 답변의 사본과 주요 서류는 지명된 자문위원들에게 가급적 빨리 보내야 된다.

## **C. 일반규칙**

1. **청원서 제출:** 청원은 문서로 하며 의결기구의 서거나 교단대표에게 접수한다. 청원서의 사본은 청원의 대상이 되는 의결기구의 서기 및 기타 당사자들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2. **청원서 양식:** 특별히 규정된 양식은 없다. 그러나 다음 요소는 필히 청원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 a. 청원자 이름
  - b. 청원의 대상기관
  - c. 청원의 대상이 되는 결의내용
  - d. 대상기관의 결의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근거
  - e. 의결기구에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배경자료

f. 청원자가 바라는 조치

**3. 피청원자의 답변 제출:** 피청원자는 청원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할 권리가 있다. 피청원자는 답변서를 청원서의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로 청원 건을 심의하는 의결기구의 서기에게 제출해야 된다. 답변서의 사본은 청원자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4. 의결기구나 위원회에 출석할 때 청원자와 피청원자는 각각 교인 중 다른 사람을 대변인으로 세우든가 그의 조언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 30조 b항 보칙**

이 조항은 별개의 두 가지 사안을 다룬다. 칼빈신학교 이사회나 목회자후보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못한 사람이 제출한 신학교졸업자 후보신청서를 총회가 재검토하는 경우와 본 교단의 관계기관이나 여러 이사회나 위원회의 결정이나 조치에 불복 청원하는 경우다. 두 가지 사안에 적용되는 절차 규칙은 다음과 같다.

**파트 A.** 칼빈신학교의 이사회나 목회자후보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못한 사람이 제출한 후보 신청서를 총회가 재검토하는 경우

신청자의 후보자자격 신청 처리와 관련하여 칼빈신학교 이사회나 목회자후보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신청자가 불공정하게 되었다고 느끼거나 불만을 느낀 경우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총회에 호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절차는 헌법개정을 요구하거나 총회 결의를 변경해 달라는 요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것보다는 후보자가 되는데 필요한 기존의 조건들이 헌법이나 총회의 다른 결정들과 상치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를 검토하면서 청원자의 후보신청을 총회에서 재심 받는 권리를 규정한 것이다. 이 절차는 특별한 종류의 청원으로서 재판국 규칙을 발동하지 않으며 다른 청원에 관한 규칙도 적용하지 않는다.

1. 칼빈신학교 이사회나 목회자후보위원회 또는 목회자후보위원회가 지명한 사람이 어떠한 과정에서나 신청자의 후보신청 처리를 거부할 경우, 또는 신청자가 후보로 추천될 가능성이 없을 경우, 목회자후보위원회는 이런 조치나 결정이나 근거를 서면으로 지체 없이 본인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2. 이런 공지에도 불구하고 신청자는 총회에 신청하는 등 그의 신청을 진행시킬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이 선택권을 행사하려면 신청자는 목회자후보위원회로부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목회자후보위원회와 본 교단의 교단대표에게 이 선택권을 행사하겠다는 통지문을 보내야 한다.

3. 신청자가 전항에 규정된 대로 통지문을 보내면, 신청서는 처리되어야 한다. 신청에 관하여 목회자후보위원회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건의와 근거를 신청서에 첨부해 총회로 보내야 한다.

4. 신청자는 총회가 소집되기 최소한 10일 전에 목회자후보위원회의 결정과 함께 자신의 진상설명서와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류를 교단대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총회는 신청서와 관련서류, 이사회나 목회자후보위원회의 결정과 관련된 근거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신청자와 목회자후보위원회는 지정된 자문위원회에서 자신들의 결정과 주장을 설명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해당 위원회와 총회가 동의한다면, 신청자와 목회자후보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총회에서 설명할 시간을 갖게 된다.
6. 신청자와 목회자후보위원회는 재검토 과정에서 각각 다른 교인 한 사람을 대변인으로 세우거나 그의 조언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파트 B.** 본 교단의 관계기관, 이사회, 위원회의 결정이나 조치에 불복하여 청원하는 경우

본 교단의 관계기관이나 이사회나 위원회의 결정이나 행위나 조치에 불복 청원할 수 있는 권리는 확립되어 있다. 이런 청원에는 재판국 규칙도 발동시킬 수 있다. 재판국 규칙을 발동시키면, 청원과정은 재판국 규칙의 적용을 받게 된다. 재판국 규칙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절차를 적용한다.

1. **이사회, 기관, 위원회**는 이사회나 기관이나 위원회의 대리자와 직원을 의미하며, 이 때 이런 대리자나 직원은 이사회나 기관이나 위원회에서 규정한 지침과 위임된 권한 내에서 수행하는 자다.
2. 제30조 b항 보칙에서 규정된 청원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a. 북미주 개척교회의 성도
  - b. 의결기구 (카운실 또는 노회)
  - c. 그 행위나 조치가 청원의 대상이 되는 기관, 이사회, 위원회의 직원
3. 청원을 제출하는 개인 또는 의결기구는 청원자 (Appellant)라 한다. 청원의 대상이 되는 이사회나 기관이나 위원회의는 피청원자 (Respondent)라 한다.
4. 제30조 b항 보칙의 이 부분에 의한 청원은 이사회, 기관, 위원회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불평과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청원자가 합리적이고 직접적인 노력을 다 해보고 난 뒤에 제출할 수 있다.
5. 본 규정에 따른 청원은 피청원자의 결정, 행위나 조치가 헌법, 피청원자가 위임받은 명령 또는 피청원자가 소속한 의결기구가 이전에 내린 결정에 배치될 경우에 한해 제기할 수 있다.

6. 의결기구나 피고용인 아닌 청원자가 이 규정에 따른 청원을 제기할 때 청원의 대상이 되는 피청원자의 결정, 행위나 조치가 교회의 다른 성도들과는 달리 청원자에게 물질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개인의 책임과 자격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7. 고용인이 이 부분에 의해 청원을 제기할 때 청원의 대상이 되는 피청원자의 결정, 행위나 조치가 청원자에게 물질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고용인의 책임과 자격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8. 관계기관이나 이사회나 위원회의 결정이나 행위나 조치에 불복 청원할 경우 그 해당 기관, 이사회, 위원회가 소속된 의결기구에 제출해야 된다.

9. 원 제출 시한은 상기 4항의 규정에 따라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한 이후에 90일 내로 제출하여야 된다.

문제 해결을 위해 내부적으로 모든 노력을 다 하였다는 말은 정확하게 90일 동안의 청원 기간이 시작하는 날짜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청원서 제출 기간의 시작을 어느 때부터 할 것인가 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a. 관계기관이나 이사회나 위원회가 청원자에게 고충과 불평을 해결하기 위한 내부적 절차가 끝났다고 선언하는 통지문을 보냈을 경우, 청원자가 이런 통지문을 받은 날로부터 청원할 수 있는 90일 기간이 시작된다.

b. 상기 a항의 통지문이 발송되지 않았다면, 청원자는 관계기관이나 이사회나 위원회에 고충 또는 불평 처리를 위한 더 이상의 내부절차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낼 수 있다. 만약 이런 통지문을 접수하고도 30일 내로 아무런 회신이 없다면, 통지문 접수 후 30일이 끝나는 날로부터 90일 동안의 청원할 수 있는 날짜가 시작된다. 본 조항에 관한 한, 통지문이 기관, 이사회, 위원회에 인편으로 배달된 경우에는 당일, 우편으로 보냈을 경우에는 5일 후 접수된 것으로 간주된다.

c. 만약 관계기관이나 이사회나 위원회가 상기 b항에 언급된 통지문을 접수하고 30일 내로 청원자에게 아직도 시도할 내부 절차가 더 있다고 답변해 왔다면 청원자는 추가 절차를 시도하여야 된다. 추가 시도가 끝나서 청원 기산일을 정할 필요가 있을 때 규칙 a항과 b항이 적용된다.

10. 청원을 노회에 제출해서 심의될 때 청원자와 피청원자는 공히 구두로 진술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노회는 접수받은 청원에 대해 일일이 심의 결정해야 된다. 노회는 서기가 청원을 접수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결의해야 된다. 만약 노회가 1년 이내에 결의하지 못했다면 청원자나 피청원자는 노회의 결의를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총회에 직접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청원자와 피청원자는 노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총회에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11. 청원이 총회에 접수될 경우, 제30조 a항 b항 및 b항 보칙에 규정된 규칙과 절차가 적용된다.
12. 청원자와 피청원자는 이 모든 청원의 과정 중에 각각 다른 한 교인을 대리인으로 세우든가 그의 조언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 30조 c항 보칙

### 권리와 절차에 관한 재판국 규칙

#### 재판국 규칙 전문

1977년 총회는 권리와 절차에 관한 재판국 규칙의 초판을 채택하였다. 이 문서를 채택한 이유는 “상소에 관한 판단절차를 우리 교단내에서 통일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상소에 관련된 개인들과 교회의 결정을 다름에 있어서 공정하게 할 수 있다”고 교단이 판단하였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판단을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성경이 요구하기 때문이다 (신 1:16-17; 신 16:18-20; 레 19:15; 딤후 5:19-21). “재판국 규칙 지침서”는 실제 문제를 “교회적인 방법”에 따라서 적합하게 다루기 위해서 필요하며 (교회헌법, 제28조), 총회는 본 재판국 규칙이 “사랑의 법을 충족시키기 위한 절차적 방법을 (약 2:1, 8-9) 제공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재판국 규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재판국 규칙은, 대부분의 경우에 청문회나 그 후에 이어지는 교회의 회의가 양자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마지막 방편의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완전한 화해는 얻기 어려울 것이다. 재판국 규칙 청문회와 그 후에 이루어지는 교회의 회의의 결정의 일차목적은 화해가 아니라 최종결정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재판국 규칙이 해당 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결정에 이르는 공정한 과정을 부여하지만, 보통의 경우 분쟁으로 망가진 상호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재판국 규칙이 보장하는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 분쟁 해결의 동의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들은 외부의 훈련된 전문가나 중재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중재자의 도움은 더욱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도 한다.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한 방법은 회복적 정의의 방법이다. 2005년도 총회는 “분쟁으로 인한 가해자와 피해자들을 화해시키고 회복시키며,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을 위한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방편을 사용하여 교회들과 성도들이 회복적 정의에 적극적인 참여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 총회는 또한 “교회와 학교, 교단의 직분들과 모든 기독교 기관들, 그리고 가정이 회복적 정의를 실천할 것”을 요청하였다 (2005 총회회의록, 761-62쪽). 회복적 정의의 실천은 진정한 화해를 이루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러나 육체적인, 감성적인 그리고 성적인 가해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회복적 정의 노력과 중재는 반드시 적합하지는 않다. 그러한 경우의 문제는 총회가 인정한 과정과 교단의 학대방지 사역에 관련된 과정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 (2010 총회회의록, 866쪽, 2010총회안건집, 497-502쪽 참고)

따라서, 고발을 접수하고 공적인 청문회를 요구하여도, 교회는 해결을 위한 모든 공적이고 사적인 노력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만약 모든 충분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러한 노력이 없었다면 교회는 법적 청문회를 연기하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모든 충분한 방법을 사용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교회는 아래에 정한 법적인 청문회를 추진하여야 한다.

### 섹션 1: 재판국 규칙의 범위

a. 하나님의 말씀이나 신앙고백, 또는 교회헌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한 분쟁은 재판국 규칙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재판국 규칙은 특별히 혐의를 접수하는 과정과, 카운실, 노회, 그리고 총회에서 공적인 청문회를 시행하는 과정, 그리고 청문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을 관리한다.

b. 권고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양 당사자나 교회가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문건이 접수되기 전에는 청문회 열리지 않는다. 재판국 규칙은 권고나 징계에 관한 모든 사항에 있어서 목회적 방편의 근본적이고 우선적인 노력을 인정한다. 그러한 노력은 상담과 설득으로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다. 만약 처벌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회헌법에 근거하여 교회가 판단한다.

c. 재판국 규칙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해결한다:

- i) 교인과 교회의 회의 사이의 분쟁, 그리고 드물게 비교인과의 분쟁 (섹션 3-a 참조).
- ii) 해임에 관련한 사항을 제외한 교단의 기관, 이사회, 위원회가 교인, 회를 대하여 발생한 분쟁 (섹션 3-a, 5-d, 5-e 참조).

d. 이에 관련하여 재판국 규칙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i) 서면 고발이 접수될 때; 물질적 또는 개인적 직접적 상해를 받은 개인, 직원, 또는 교회회의가 서면 고발을 접수할 때; 그리고
- ii) 해당 당사자 중 한 쪽이 청문회를 요구하거나 또는 교회가 먼저 해당 혐의를 듣고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결정하였을 경우.

### 섹션 2: 재판시 권리

a. 고소인과 피고인은 어떠한 청문회에서도 CRC 교인 한 명의 대리나 도움을 받을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청문회를 주관하는 교회의 판단에 따라서 교인자격 조건을 면제할 수도 있다.

- b. 재판국 청문회에서 제기된 문제를 교회가 결정하기를 포기한 경우가 아니라면, 고소인과 피고인은 재판국 청문회와 재판국 청문회에서 제기된 이의를 다루는 재판국 청문회에 출석할 권리를 가진다.
- c. 고소인과 피고인은 그들이 출석한 상태에서 증인들의 증언을 들을 권리를 가진다.
- d. 고소인과 피고인은 교회회의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여 상위 교회회의에서 다루도록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 e. 재판국 규칙의 과정은 청문회에서 내려진 결정에 대한 모든 이의에 적용된다.
- f. CRC의 어떠한 개인이나 그룹 그리고 해당 사건과 관련된 어떠한 사람도 해당 사건이 최종 결론에 이르기 전에 고소인의 주장을 담은 어떠한 문서도 공개해서는 안된다
- g. 재판국 규칙의 모든 해석과 적용은 적법한 과정을 보장하는 원칙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 h. 모든 청문회는 사려깊고 기독교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섹션 3: 고소를 접수하는 과정**

- a. 문서화된 고소장을 다음과 같이 접수한다:
  - i) CRC의 개인이 다른 멤버나 교회를 상대로 접수할 수 있다.
  - ii) 교회가 다른 교회나 개인을 상대로 접수할 수 있다.
  - iii) CRC교인 아닌 개인이,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을 경우에, 교회의 교인이나 교회를 상대로 접수할 수 있다.
  - iv) CRC의 개인이 교단의 기관, 이사회, 위원회를 상대로 접수할 수 있다.
  - v) 교회가 교단의 기관, 이사회, 위원회를 상대로 접수할 수 있다.
  - vi) 해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면 기관, 이사회, 위원회의 직원이 기관, 이사회, 위원회를 상대로 접수할 수 있다.

#### **b. 전제조건**

- i) 고소내용이 CRC학대방지 사역부의 학대대응절차 (Advisory Panel Process)에 규정된 교회 지도자에 의한 학대라면, 그 고소는 우선적으로 그 문서에서 규정하고 또한 본 재판국 규칙 섹션 2-5에 규정된 과정에 따라서, 해당 교회 지도자의 카운실에서 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 비밀을 보장하는 원리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한다. 고소인과 피고인 모두 섹션 6-7에 의거하여 노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ii) 교단의 기관, 이사회, 또는 위원회를 고소할 경우에, 고소인이 우선적으로 고소내용을 해당 기관, 이사회, 그리고 위원회가 규정하는 과정을 따라서 내부적으로 모든 타당하고 직접적인 노력을 하기 전까지는 고소를 제기할 수 없다.

c. 시효:

i) 성적학대의 경우에 고소를 접수의 시효는 제한하지 않는다. 교회 지도자에 의한 성적학대 관련 고소는 CRC학대방지 위원회가 정한 학대대응절차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ii) 아동에 대한 성적학대가 아닌 고소는 고소인이 25세가 될 때까지 언제든지 접수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에 대한 성적학대가 아닌 고소는 CRC학대방지 위원회가 정한 학대대응절차가 우선 적용된다..

iii) 그 밖의 모든 고소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생각되는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되어야 한다.

d. 고소장을 접수하는 개인이나 교회를 고소인 (complainant)이라 부르고, 고소를 받은 개인과 교회를 피고인 (respondent)라고 칭한다.

e. 고소장은 교회회의에 접수되어야 하며, 주장하는 사건을 설명해야 하고, 고소장을 증명할 사실을, 가능하면 사건이 발생한 시간과 장소를 포함하여, 적시하여야 하고, 청문회 요청 여부를 밝혀야 한다.

f. 하나의 고소는 하나 이상의 사건을 다루지 못한다. 동일한 피고인을 상대로 여럿의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고, 묶어서 결정할 수는 있으나, 각각의 고소는 각각 결정되어야 한다.

g. 고소인은 교회회의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동시에 피고인에게 고소장의 복사본을 우편이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h. 고소장이 접수된지 60일 이내에 피고인은 교회회의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그 복사본을 고소인에게 우편이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고소인이 청문회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 피고인은 답변서에서 청문회 요청 여부를 밝혀야 한다.

i. 교회회의의 관할

i) CRC의 교인을 상대로 한 고소장은 피고인이 속한 교회의 카운실에 고소인이 접수한다.

ii) 교회를 상대로 한 고소장은 그 교회회의의 상회기관 (카운실, 노회, 총회의 순서로)에 고소인이 접수한다.

iii) 교단의 기관, 이사회, 위원회 (그 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를 대상으로 한 고소장은 기관, 이사회, 그리고 위원회가 보고하는 교회회의에 고소인이 접수한다.



iv) 카운실와 노회의 기관, 이사회, 위원회가 피고인인 경우, 청문회는 섹션 2-5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노회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v) 노회와 총회의 기관, 이사회, 위원회가 피고인인 경우, 청문회는 섹션 2-5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재판국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 **섹션 4: 청문회 이전 과정**

a.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청문회는 고소장이 접수된지 6개월 이내에 진행한다.

b. 교회회의는 고소인과 피고인과 윈논한 뒤에 고소에 대한 청문회 시간과 장소를 정한다. 청문회 개최 전 최소 45일 이전에 날짜를 확정하고 양측에 통보되어야 한다.

c. 청문회 개최 전 최소 30일 이전에 양측은 상대방과 교회회의에 청문회에 증언할 증인의 리스트와 청문회에 제시할 증거물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청문회에서, 증인과 제시물이 마감일까지 발견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지 않는 한, 양자의 주장은 증인의 증언과 제시물에 제한된다.

d. 교회회의는 재량으로 양측이 청문회에서 주장하는 증인, 문서, 증거물, 그리고 주장에 관하여 추가 증거를 요구할 수 있다.

e. 카운실와 노회에 고소장이 접수된 경우, 해당 카운실와 노회가 고소를 담당하며, 고소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멤버를 제외하고, 해당 교회기관의 모든 개인이 참여한다.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퇴장한다.

f. 고소인과 피고인은 청문회에서 한 개인의 이익 충돌, 또는 그가 상대방과 가지고 있는 관계나 그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근거로 공평치 않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해당 교회회의가 그 이의가 이유가 있다고 다수결로 결정할 경우, 해당 당사자는 청문회에서 퇴장한다.

g. 청문회가 진행되기 전에 교회회의는 고소장의 내용이 청문회를 요청할 만큼 타당성이 있는지 결정한다. 교회회의는 고소장, 답변서, 제시된 증거물을 조사함으로써, 그리고 교회회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양측 또는 대리인과의 비공식 모임을 통해서 그러한 판단을 한다. 교회회의는 제시된 내용 조사와 비공식 모임을 한 위원회에 맡길 수 있다. 그러나 그 위원회의 조사내용을 받은 후에 교회회의가 해당 결정을 하여야 한다. 교회회의는 이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관계된 사람들 개인을 보호하고 고소가 진행될 경우 공평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비밀을 보장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카운실나 노회가 고소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그러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h. 고소인이나 피고인이 요구할 경우 또는 교회회의가 옳다고 판단할 경우 교회회의는 모든 관계자로 하여금 해당 고소에 대한 회의록을 비공개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한 결정은 모든 관계자들에게 공지되어야 한다.

## 섹션 5: 청문회 과정

a. 청문회가 결정되면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 i) 양측은 자신이 증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요약하는 모두발언을 한다.
- ii) 고소인이 먼저 증인과 제시물을 포함하여 자신의 증거를 제시하며, 교회회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피고인의 주장에 반대하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 iii) 그 후에 피고인이 증인과 제시물을 포함하여 자신의 증거를 제시한다.
- iv) 증거를 접수함에 있어서 공식적 증거법칙에 규제되지 않는다. 선서의식도 필요하지 않다.
- v) 한 측이 요청하고 의장이 제시된 증거가 해당 사건과 무관하거나, 신뢰할만하지 않거나, 근본적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어떠한 증거도 제외시킬 수 있다.
- vi) 청문회에서 양 측은, 청문회 시작전 적어도 15일 전까지 증인의 서면증언을 인정하겠다고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증인들에게 질문할 수 있다.
- vii) 모든 증거가 청문회에 제시된 후에 고소인과 피고인은 구두나 서면으로 자신의 주장을 요약한다. 고소인은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 viii) 한 측이 회의록의 부당함을 지적하면 그러한 지적은 기록으로 남긴다. 의장은 그러한 지적을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의장의 결단이 부당하다고 지적이 되면, 회의는 의장이 계속할 지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b. 증언은 요약해서 기록한다.

c. 고소인은 자신의 서면주장을 입증할 책임을 가진다. 서면주장은 충분한 개연성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d. 직원이나 교회가 아닌 고소인이 교단의 기관, 이사회, 위원회를 상대로 고소를 접수할 경우에, 어느 청문회에서든지 해당 고소인이 입증할 책임을 가지며, 해당 개인 고소인은 자신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의 결정, 행위, 일련의 행동이 자신에게 충분하고 직접적으로, 물질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 교인이 아닌 개인으로서 영향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e. 교단의 기관, 이사회, 위원회를 상대로 직원이 고소를 접수할 경우, 어느 청문회에서든지 해당 고소인이 입증할 책임을 가지며, 해당 개인 고소인은 자신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의 결정과 행위와 일련의 행동이 자신에게 충분하게 직접적으로, 물질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자신의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 f. 해당 교회회의가 청문회의 시간과 장소가 피고인에게 전달되었으며 참석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피고인이 불참했다 판단할 때에, 피고인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 g. 청문회 도중에 의장은 해당 사건의 가치에 대하여 언급하면 안된다. 해당 회의가 최종 변론 시점에 도달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 h. 어떠한 경우든지 최종 결정은 해당 사건의 청문회 위원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모든 회의에 모두 참석하지 않았거나 해당 사건의 전말을 듣지 아니한 위원은, 투표가 진행되기 전에 해당 기록을 읽거나 듣기 전에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 i. 이 재판에 사용된 증언, 전시물, 서류, 증거, 발견물을 포함한 모든 기록은 현임원들이 공증하여야 하고, 향후 항소의 기초가 된다. 양측은 통상적으로 이 기록에 접근할 수 있다.

## 섹션 6: 항소

- a. 항소는 해당 교회회의의 상위기관에 접수한다
- b. 항소의 근거는 하위 교회회의의 회의록이 기록한 불공정, 증거를 접수나 거부에 관한 결정, 해당 사건에 관한 편견이나 편향됨, 결정에 있어서의 명백한 부당함, 말쑼에 관하여 또는 신앙고백이나 교회헌법에 관한 부당한 해석과 적용을 포함하며 청문회 회의록에 근거하여야 한다
- c. 해당 사건의 진행이 명백하게 부당했다거나, 결정이 증거에 의해서 분명하게 지지되지 않았거나, 말쑼과 신앙고백, 그리고 교회헌법이 부당하게 해석되고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문회에서의 결정은 수정되거나 반복되지 아니한다.
- d. 항소를 받은 교회회의는 하위 교회회의에서 진행된 증인들의 진위여부를 재조사하지 아니한다.
- e. 법집행을 하는 CRC의 교회회의의 결정에 관하여 총회에 항소를 하거나 교단의 기관, 이사회, 그리고 위원회 재판국 규칙에 관련하여 항소를 하였을 경우에 재판국에 접수한다.
- f. 해당 사건에 관련하여 교회회의에서 투표에 참여한 개인은 항소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 g. 청문회에 개인이 직접적으로 또는 대리인이 참여하지 않고 패한 당사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섹션 7: 카운실와 청문회 후에 노회에 항소를 제기한 경우의 과정

- a. 청문회 그리고 학대방지정책 (Safe Church proceeding) 결정에 이은 카운실의 결정에서 패한 당사자는 회의록이 확정되고 90일 이내에 노회의 서기에게 항소의 근거를 담아 서면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이의제기의 사본은 또한 해당 사건의 상대방이나 그의 대리인에게 그리고 해당

사건을 결정한 카운실의 서기에게 전달해야 한다. 항소를 접수하면 카운실의 서기는 즉시 확정된 회의록을 노회로 발송해야 한다. 항소가 학대방지정책이 적용되는 경우 학대대응절차의 제 12단계의 기록이 참고가 된다.

b. 노회에서의 항소 청문회는 해당 항소의 주장의 근거에 제한하여 진행한다.

c. 패한 당사자는 항소를 서면으로 접수할 수 있다. 확정된 회의록이나 다른 문서를 근거로 항소의 근거가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항소의 신청서의 사본을 해당 상대방에게 발송되어야 한다. 노회에서 허락을 받지 않는한, 항소 문서는 30 쪽, 더블 스페이스를 넘지 않아야 한다.

d. 60일 이내에 상대방은 해당 항소에 관한 답변을 회의록이나 다른 문서의 근거와 함께 노회 서기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답변서와 해당 근거의 문서들의 사본을 패한 상대방에 발송하여야 한다. 노회에서 허락을 받지 않는한, 답변서 문서는 30 쪽, 더블 스페이스를 넘지 않아야 한다

e. 항소 신청인이 사망한 경우 해당 회의가 해당 사건이 교단에 중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또는 신청인의 대리인이 항소의 필요성을 입증할 경우, 청문회의 진행하여 결정할 수 있다.

f. 항소가 접수된 날짜로부터 90일 이후 180일 사이에 개최할 항소 청문회를 노회가 계획하고 그 시간과 날짜를 양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g. 항소 청문회에서 양자는 자신들의 주장을 설명하고 노회의 질문에 답변할 기회를 가진다. 패한 당사자가 먼저 설명하고 상대방이 자신의 주장을 설명한 후에 답변할 기회를 가진다. 특별하게 허락이 되지 않는한, 양자의 구두 설명은 30분으로 제한한다.

h. 양자의 구두설명을 들은 후에 노회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즉각적으로 해당 사건을 고려하고 결정해야 한다. 어떠한 항소에 관한 마지막 결정도 노회 의회정족수에 과반수의 투표로 결정한다

i. 노회는 카운실의 결정의 전체나 부분을 확증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또한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청문회를 다시 개최할 지시를 담아서 카운실로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카운실의 결정을 수정하거나 반복하는 노회의 결정은 수정과 반복의 근거를 기록한 회의록으로 남겨야 하며 양자에 전달되어야 한다. 항소 청문회가 개최된지 45일 이전에 양자에 전달되어야 한다.

j. 서면 결정이 발송된지 90일 이내에 노회결정에 대한 항소를 노회에서 접수하는 과정에 따라서 총회에 접수할 수 있다.

## **섹션 8: 총회의 재판국 (Judicial Code Committee)**

a. 총회에서 열리는 청문회나 패한 해당자가 항소를 해서 열리는 청문회는 총회가 임명한 재판국으로 인계된다. 이 위원회는 총회와 총회 사이에 필요에 따라서 모이며 권고사항을

서면으로 총회에 보고한다. 총회진행 규칙에 이 재판국에 관한 특별한 규정들이 있으나 이 위원회도 총회의 통상적인 위원회로 운용된다.

b. 재판국은 다양성을 반영하는 교단의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가능하면 이중 최소 25퍼센트는 민족적 다양성을 반영하게 하며, 남녀 동수로 구성한다. 매해 3년을 임기로 하는 4명을 임명한다. 이 4명 중에 적어도 1명은 목사나 전도목사 중에서 임명하며, 1명은 법률을 전공한 사람으로 하고, 적어도 1명은 목사나 전도목사, 또는 법률을 전공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임명한다. 북미주 개혁신교회 중앙이사회(COD)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가 임명한다. 재판국이 중앙이사회에 특정 인물을 추천할 수 있다. 이 위원회 회원의 임기는 총회가 임명한 후 7월 1일부터 시작한다. 사퇴나 사망으로 인해서 위원회에 결원이 발생하면 교단 중앙이사회가 잔여기간을 위한 위원을 임명한다. 위원은 재임명될 수 있으나 6년을 연임할 수는 없다. 2년 이상 위원회를 떠났던 이전 위원은 새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 재판국은 그 위원 중에서 의장과 서기를 선출한다. 그와 함께 교단대표는 재판국 의장에게 재판과정에 관하여 조언하는 진행자문으로 참여한다. 총회에서 발언하는 재판국 위원은 해당 총회의 총대일 수 있으나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 **섹션 9: 총회가 법집행을 하는 경우의 청문회와 이의제기 과정**

a. 총회에 서면으로 접수된 신청서는 CRC 교단대표에 의해서 재판국 으로 인계되어 재판국 규칙에 따라 첫번째 청문회를 시행한다.

b. 노회 청문회 이후의 결정에 대한 항소로 접수된 신청서도CRC의 상임총무에 의해서 재판국으로 인계되어 재판국 규칙에 따라서 항소 청문회를 시행한다.

c. 교단의 기관, 이사회, 또는 위원회를 상대로 접수된 서면 신청서와 총회가 시행한 사안에 관하여 판단이 필요한 경우도CRC 교단대표에 의해서 재판국으로 인계되어 재판국 규칙에 따라서 청문회를 시행 한다.

d. 노회에서 청문회에 관하여 총회에 회부된 항소도 CRC 교단대표에 의해서 재판국으로 인계된다. 재판국은 항소를 조사하고 해당 사건을 재조사할 이유가 타당한지에 관하여 중앙이사회에 권고한다. 중앙이사회가 더 이상의 조사를 허락하지 않는 한 더 이상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다. 중앙이사회가 허락할 경우 재판국은 재판국 규칙에 따라서 이의제기 청문회를 개최한다.

e. 재판국은 해당 사건에 관한 사실과 권고사항을 근거와 함께 서면으로 총회에 제시하고, 총회의 회기 시간에 공적으로 다룬다. 해당 사건에 관련된 사람의 이름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발견된 사실과 권고사항을 밝히는 문서에 그들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다

보통 보고서는 해당 사안이 다뤄지는 총회전에 총대에게 제공되어 보고서를 미리 읽을 시간을 준다. 그러나 재판국은 보안유지가 필요하다고 여길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총회 회기중 회의 하루 이틀 전에 보고서를 제공하도록 총회 임원에게 권할 수 있다.

총회 개최 전 최대15일, 최소 10일 이전에 진정과 회답의 서면보고서를 교단대표 사무실로 접수하여야 한다. 서면 진정과 회답은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지 않겠다는 서약이 포함되어야 한다.

f. 진정이나 회답이든 서면보고서가 도착하면 총회에서 다룰 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재판국은 즉시 임원에게 권하여 절차를 다룰 것을 확보하여야 한다. (교회헌법 제 30조 c항, 섹션 2, g) 여기서 얻은 주소 등 정보와 결정의견은 한 측만 요구하였다 하여도 양측 모두에 즉시 전달해야 한다.

g. 재판국은 재판국 규칙 사항에 관하여 총회의 임원들에게 서면으로 적합한 권고를 할 수 있다.

h. 총회는 아래에 열거한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따라서 재판국 규칙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i) 그 사항을 결정함으로

ii) 조정과 화해할 것을 총회의 한 위원회에 맡김으로

iii) 해당 노회나 카운실에 권고사항을 담아서 돌려보냄으로

iv) 총회 차원의 첫번째 청문회나 항소 청문회를 개최함으로

i. 총회 차원의 청문회와 이의제기 청문회를 개최할 경우 재판국 규칙에 명시된 절차를 따른다

(1977 총회회의록, 48-54쪽)

(1993 총회회의록 수정, 499쪽)

(1996 총회회의록 수정, 484-88쪽)

(2003 총회회의록 수정, 688-91쪽)

(2013 총회회의록 수정, 549쪽)

(2014 총회회의록 수정, 569쪽)

(2015 총회회의록 수정, 627쪽)

(2019 총회회의록 수정, 717-18쪽)

## 제 31조

회의 결정에 대한 변경 요청은 그 결정을 했던 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한 요청은 다시 고려할 만한 충분하고 새로운 근거들이 제시될 때에만 받아들여진다.

- 제31조 보칙 참조

## 제 31조 보칙

상위 의결기구에 결정을 수정해 달라는 요청은 가급적 그 상위 의결기구에 오기 전에 해당 의결기구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 총회의 입장이다.

(1983 총회회의록, 653-54쪽)

## 제 32조

a. 모든 교회 회의는 기도로 시작하고 마친다.

b. 모든 회의는 회장을 둔다. 회장의 직무는 처리해야 할 안건들을 진술 설명하고, 교회 헌법의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그리고 회원 발언 시 마땅한 질서와 예절을 준수하는지 살피는 것이다. 서기의 직무는 회의 진행의 정확한 기록을 작성이다. 교회의 회의에 있어서는 이 직분들은 회의가 폐회될 때에 종식된다.

c. 각 회의는 각종 서류들을 접수하고, 안건을 만들고, 결의 사항을 작성하며, 서류와 기록을 보관하며, 그 회의의 재정적 업무를 처리하는데 적절한 방안을 마련한다

d. 각 회의는 적절한 단체 설립을 통해 그 재산을 보호한다.

- 제32조 d항 보칙 참조

## 제 32조 d항 보칙

### A. 미국에 있는 교회에 적용할 정관 모범

#### 정관 (Articles of Incorporation)

아래에 서명한 우리는 단체를 설립하기 원하는 바 다음과 같이 기본정관을 채택합니다.

#### 제1조 단체의 이름

본 단체 (교회)의 이름은 \_\_\_\_\_ 이다.

## 제II조 위치

교회의 위치는 \_\_\_\_\_ 시, \_\_\_\_\_ 카운티, \_\_\_\_\_ 주(州) 이다. 교회의 우편 주소와 등기된 주소는 \_\_\_\_\_ 이다. 등록된 사무실의 상주 대리인의 성명은 \_\_\_\_\_ 이다.

## 제III조 기본원칙

본 교회는 북미주 개혁신교회 (Christian Reformed Church in North America) 소속으로 다음 사항들을 교리와 교회제도의 기본원칙으로 인정한다: (a)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삶에서 유일한 기준인 성경, (b) 북미주 개혁신교회의 공통신조, 즉 벨직 신앙고백,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돌트 신경 그리고 북미주 개혁신교회 교단 총회가 채택한 수정이나 추가사항.

## 제IV조 목적

본 교회는 1986년에 제정된 미연방 내국세법 501절 c항 (3)호 또는 그 이후에 수정된 조항 (이하 법이라 칭함)에 따른 종교적 목적으로 설립되고 운영되는 비영리단체다.

본 교회는 다음에 열거한 자격에서 허가되지 않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 (a) 법 501절 c3항에 의거 미 연방 수입세를 면제받는 단체; (b) 법 170절 c2항에 의거 기부금의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단체. 본 교회는 금전상의 이익이나 보수를 목적으로 설립되지 않았다. 교회의 자산, 수입 또는 이익은 교인, 카운실 위원 또는 직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회는 주어진 봉사에 대해 합리적인 보수를 지급하고 제IV조에 제시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금전을 지급 및 분배한다.

본 교회는 선거운동이나 입법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또한 본 교회는 공직에 출마하는 후보를 위해 어떠한 정치운동에 참여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

## 제V조 교회 운영

교회의 제도는 총회가 채택하고 개정하는 북미주 개혁신교회의 헌법 (이하 “교회헌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된다.

헌법에 규정된 본 교회의 카운실은 이사회를 구성해서 헌법과 관련 주법(州法)이 규정하는 교회의 세속적인 업무를 관장한다.

헌법에 의해 목사 (한 명 또는 그 이상), 장로 및 집사로 선출된 사람은 본 교회의 교인이어야 한다. 직책에 관련된 법인의 기능은 그 직책이 공석이 되면 정지하지만, 목사의 직이 공석이 되더라도 이사회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 제VI조 재산

### A. 재산의 소유

본 VI조에 뚜렷하게 규정된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본 교회는 복미주 개혁신교회 교인으로서 그리고 본 정관 법 제III조와 V조에 규정된 신조와 교회의 제도를 본 교회가 소속한 노회에서 해석하는 바에 따라서 그리고 총회에서 교단헌법에 일치된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서 증진시키기 위해 모든 부동산 및 동산을 소유한다.

### B. 교회가 해체될 경우

본 교회를 해체하고 단체를 해산할 경우, 교회의 부채와 경비를 지불하고 남는 자산은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서 이사회가 제안하고 남은 교인 과반수가 찬성하는 대로 양도한다. 이러한 결정은 다음의 경우에 따른다.

1. 노회가 교회의 해체와 단체의 해산을 승인해야 된다.
2. 이사회는 재산분배 제안을 공식화하려면 노회의 권고를 받아야 한다.
3. 교인의 투표는 본 정관 제VII조의 B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4. 남는 자산은 법501절 c항 (3)호에 의거하여 하나 혹은 복수의 면세혜택을 받는 기관에게만 분배하여야 한다.

### C. 교회가 합의에 의해 분리될 때

교회의 교인의 과반수가 교회를 2개 또는 그 이상의 복미주 개혁신교회 소속 교회로 분리하기로 합의했을 때, 노회의 동의 받아, 본 단체의 모든 부동산과 동산은 본 정관 제VII조 B항의 규정에 의해 교인 과반수의 동의대로 분배한다.

### D. 교회가 합의하지 못하고 분리될 때

불화로 인해 교회 내부에서 분열이 생겼다고 노회 (또는 총회)가 결정할 경우, 노회 (또는 총회)의 판단에 의거하여 복미주 개혁신교회 교회설립 목적과 교리 및 본 정관 제III조와 V조에 규정된 교회제도에 충실한 것으로 판단된 교회의 세례교인들이 교회의 부동산 및 동산을 소유하고 누리는 권리를 독점한다. 제VI조 규정의 어느 구절도 노회 (또는 총회)가 고린도전서 6장의 영적인 명령에 따라 믿음을 고백하는 교인들의 모임이 한 개 이상 복수일 경우, 각 그룹을 합법적인 회중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막거나 노회가 (또는 상소하는 경우 총회가) 결정하는 대로 몇 개의 모임 간에 부동산 및 동산을 분배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노회는 (또는 상소하는 경우 총회가) 동산이나 부동산을 동일한 복미주 개혁신교회에 남아있지 않기로 결정한 한 모임이나 복수의 모임으로 분리할 경우에 그러한 상황을 판단할 재량권을 가진다.

## 제VII조 교인의 찬성 투표 요건

A. 본 정관의 제VII조 B에서 D항까지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교회 부동산을 매매, 양도, 저당, 임대 또는 해지 시키는 권한, 교회가 직접적으로, 합법적으로 사용키 위해 교회 건물, 목사관, 교육시설, 기타 건물을 세우고 수리할 수 있는 권한 및 교회 직원의 보수를 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B. 투표권을 가지는 출석 교인의 과반수 찬성표를 얻지 못하면 본 정관 제VII조 A항에 규정한 구입, 판매나 양도, 저당, 임대 또는 보수의 결정을 할 수 없다. 이런 회의는 이런 목적으로 2주일 전 공고하여 늘 모이는 장소에서 특별히 소집되어야 한다.

C. 교회가 불화로 분리될 경우, 부동산 및 동산의 처분은 제VI조 D항의 적용을 받으며 제VII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D. 선물, 보조금, 기증, 양도 또는 유산증여는 그 본래의 분명한 조건과 명백한 의도에 배치된 목적으로 판매, 저당, 양도될 수 없다.

## 제VIII조 개정

이사회는 이사의 3분의 2의 찬성투표를 얻는다면 언제든지 이 정관을 개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회(또는 총회)가 승인하지 않는 한,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제III조부터 제VIII조까지의 조항에 위배되는 개정안은, 노회나 (상소할 경우 총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통과시킬 수 없다.

본 정관에 대한 개정이 발효되려면 이사들은 그런 목적으로 특별히 소집된 회의에서 투표권 있는 출석 교인의 적어도 3분의 2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이 회의의 소집은 이 정관 제VII조 B항에 의거 통지되어야 한다.

## 제IX조 유한책임

자원하여 되는 교회 이사의 법적책임은 그 교회가 속한 해당 주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거나, 종식되거나, 다시 시작된다. 그러나 그러한 이사의 법적책임이 제한되고, 종식되고, 또는 다시 시작됨이 본 정관 501절 c3에 규정된 교회의 설립목적에 일치되지 않거나 또는 규정의 4958항의 세금면제 조항에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본 정관의 수정이나 폐지는 본 교회의 이어나 직분자가 정관의 그러한 수정이나 폐지가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에 행한 행동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제X조 기간

이 단체의 기간은 영구적이다. 우리는 본 정관에 서명하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짐을 증거한다.

---

(주법에 따라서 서명이 요구되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

(2009 총회회의록, 596쪽)

주 1: 상기 기본정관은 북미주 개혁신교회 웹사이트 <http://www.crcna.org> 에서 “Articles of Incorporation”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주 2: 위 정관을 미시간주 단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한 양식은 본 교단의 교단대표 사무실에서 또는 [www.crcna.org](http://www.crcna.org)에서 받을 수 있다.

## B. 캐나다에 있는 교회에 적용할 정관 모범

### 1. 단체의 이름

\* Christian Reformed Church

### 2. 등록된 사무실이 위치한 주

---

### 3. 담당자 (director)의 최대 및 최소 인원수 (정해진 수인 경우에는 두 난 모두에 정해진 수를 기입할 것)

최대\_\_\_\_\_

최소\_\_\_\_\_

### 4. 단체의 목적

본 단체의 목적은 북미주 개혁신교회 (Christian Reformed Church in North America)가 추구하는 기독교 신앙과 관련된 신조와 신앙고백, 그의 실천과 삶을 가르치고 권장하는 것이다.

### 5. 본 단체의 사역에 대한 규제, 만약 있다면.

a) 본 단체는 소속 회원의 금전상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사역할 것이며, 본 단체가 얻는 어떠한 이익과 부산물도 그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것이다.

b) 본 단체는 기부법 (Charities Accounting Act)을 준수한다.

## 6. 본 단체를 설립하는 회원의 노회, 지역 또는 단체들

본 단체는 회원을 오직 한 계층으로만 세울 수 있도록 위임받았다. 각 회원은 본 단체의 모든 회원모임에서 정보를 듣고, 참여하고, 투표할 권한을 가진다.

## 7. 단체를 청산할 때 남아있는 재산 분배에 관한 규칙

본 단체가 청산하거나 해산할 때 모든 채무를 지불한 후에, 남아있는 재산을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노회가 다음의 규정, 소득세법 s.248(1)에 따라 합당한 수혜자일 경우, 남은 재산은 본 법인이 속한 북미주 개혁신교회의 노회에 증여한다.

본 법인과 가까운 거리의 다른 북미주 개혁신교회가 다음의 규정, 소득세법 s.248(1)에 의거하여 합당한 수혜자일 경우, 남은 재산은 그 교회에 증여한다.

북미주 개혁신교회 캐나다 법인이 다음의 규정, 소득세법 s.248(1)의 합당한 수혜자일 경우, 남은 재산은 그 단체에 증여한다.

본 단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수혜자에게 소득세법 s.248(1)을 따라 남은 재산을 증여한다.

## 8. 추가 규정

a. 담당자는 그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비용을 합당하게 보상받는다면, 그들은 무보수로 사역을 수행하며, 어떠한 담당자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그들의 직무로부터 수입을 얻지 않는다.

b. 만약 본 법인이 동산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융자함으로써 본 법인의 차입한도가 제한을 받지 않는다면, 캐나다 비영리단체법 (Canada Not for Profit Corporation Act)에 준하고 내부 규정에 따르는 본 법인의 차입한도는 본 법인의 통상 운영을 위한 경비로 제한한다.

c. 공공 이사회규정 (Public Guardian and Trustee)의 보고에 따라서 본 법인이 자선단체법 (Charities Accounting Act)의 어떠한 규정이라도 위반했다고 장관이 판단한다면, 장관은 캐나다 비영리단체법 규정에 따라서 부지사가 법인의 허락을 취소하고 해산을 공포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를 조사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d. 신탁법(Trustee Act) 에 준하여 법인이 투자할 수 있도록

- e. 위의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목적을 위하여, 캐나다 비영리단체법의 규정에 준하여, 또는 때에 따라 다른 규정과 법규에 따라서, 다만 비영리 단체에 관한 허락과 일반 법규에 제한을 받지 않는 한도에서 본 법인이 사역을 하려고 할 때에
- f. 담당자는 한명이나 그 이상 선임하여, 그러나 그렇게 선임된 담당자의 총 숫자가 이전 해 연례 총회에서 선출된 담당자 숫자의 삼분의 일을 넘지 못하는 한도에서, 그들이 법인의 다음 년도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직무하게 하도록 할 수 있다.

## 9. 선언

*이상과 같이 단체 설립에 참여합니다.*

성명

|       |       |
|-------|-------|
| _____ | _____ |
| _____ | _____ |
| _____ | _____ |

서명

|       |       |
|-------|-------|
| _____ | _____ |
| _____ | _____ |
| _____ | _____ |

비고: 교회는 단체를 설립하며 정관을 만들 경우, 특별히 단체 설립에 관하여,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본 문서는 다만 정보를 주기 위해 제공되며 모든 캐나다의 북미주 개혁신교회에 적용되는 캐나다 비영리단체법(CNCA)을 참조하기 바란다. 필요하다면 온타리오 북미주 개혁신교회가 만든 북미주 개혁신교회의 정관을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북미주 개혁신교회가 어떠한 단체 정관을 선택할 지를 결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가능한 것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타리오 북미 개혁신교회들은, 모델 규정에서는 당연직 담당자 (ex-officio directors)를 인정하나, CNCA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법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새로운 온타리오 법규는 당연직 담당자를 인정한다. CNCA의 법규가 종교단체에 면세분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한이 없는 비슷한 온타리오 법규가 종교단체에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다.

(2012 총회회의록, 730쪽)

주: 상기 단체정관은 CRC의 웹사이트인 [www.crcna.org](http://www.crcna.org)에서 “단체정관” (Articles of Incorporation) 항목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C. 캐나다에 있는 교회의 재산에 관한 정관

a. 단체는 정관의 목적 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그리고 교회의 교단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교회의 신조와 제도에 따라, 그리고 해당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노회의 해석에 따라, 그리고 해당 사항에 대하여 고소할 경우 북미주 개혁신교회의 총회의 판단에 따라서 모든 동산과 부동산을 소유한다.

b. 노회의 동의를 얻어서 본 교회가 해산할 때에 그리고 해당 단체를 해산할 때에 재산이 남아 있다면, 모든 채무와 비용을 지불한 후에, 남은 재산은 하나 혹은 복수의 캐나다에 등록되어 있으며 세금을 면제 받는 그리고 해당 단체와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자선단체에, 카운실이 노회와 논의하여 그리고 교회 교인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권고하는 방법에 따라서 기부한다.

c. 교인의 투표에 의하여 그리고 노회의 동의를 얻어서 교회를 둘 또는 그 이상의 동일한 북미주 개혁신교회로 합의 분리하는 경우에 해당 단체의 모든 동산과 부동산은 교인이 동의한 복수의 북미주 개혁신교회들에, 해당 노회가 그 분배에 동의할 때 그리고 고소할 경우에는 총회가 동의할 때, 분배된다.

d. 노회가 (또는 고소할 경우 총회가) 불화나 교회분리에 의해서 교회가 분리된다고 판단할 때에 노회가 (또는 고소할 경우 총회가) 해당 법인에 규정된 바 교회의 목적과 신조와 제도에 충실하다고 전적으로 판단하는 등록교인들이 합법적인 교회가 되어 교적을 가지고 그들만이 그 교회의 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행사한다. 그러나 본 \_\_\_\_ 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회가 (고소할 경우 총회가) 고린도전서 6장의 가르침에 따라서 분리된 하나 혹은 복수의 등록교인 모임이 공히 합법적인 교회라고 판단하여 그 교회의 동산과 부동산을 그 교회와 그로부터 분리하여 동일하거나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 그룹과 어떠한 비율로 나눌 것을 판단할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1997 총회회의록, 620쪽)

#### D. 캐나다에 있는 교회의 제일 모범이 되는 일반정관

캐나다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모범 정관이 준비되고 총회에서 승인을 받았다. 이 모범 정관은 본 교단의 교단대표 사무실이나 웹 사이트 [www.crcna.org](http://www.crcna.org)에서 “캐나다 정관” (Bylaw Canada)에서 볼 수 있다.

#### 제 33조

a. 교회의 의결기구(결의의 집행이나 앞으로 고려해야 할 안건에 대한 연구 보고서 준비를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때는 명확히 규정된 임무를 위원회에 주고, 그 일들에 대한 정기적이고 또 충실한 보고를 하도록 요청한다.

b. 각 노회는 노회 상임위원회를 임명하고, 총회는 중앙이사회 이사를 임명하며, 노회나 총회 자체가 결정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일들을 노회나 총회를 대신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이러한 위원회의 임무는 명확히 규정된 것이어야 하며, 이 위원회는 모든 행한 일들을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 34조

상회는 하회에서 파견한 직분자들로써 구성된다. 하회는 파견하는 대표에게 적합한 대리권을 부여함으로써 상회에 제출된 일들을 협의하며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이 대표들은 자신이나 자기 교회가 직접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투표하지 않는다.

## B. 카운실

## 제 35조

a. 각 교회마다 목사(들), 장로들, 그리고 안수집사들로 구성된 카운실을 둔다. 카운실의 직무에는 교회의 사역을 추진하고, 목사 청빙, 교회 직분자의 승인, 상호 직무확인 (Mutual Censure), 노회 방문자와 만남, 기타 교회 공동 관심사 등 교회의 일반 운영에 해당하는 모든 업무를 포함한다.

- 제 35조 a항 참조

b. 각 교회마다 목사(들)과 장로들로 구성된 당회 (consistory)를 둔다. 당회는 장로의 직분에 독특하게 관련되는 사항을 다룬다. 당회는 그 직무 사역을 카운실에 보고한다.

c. 각 교회마다 집사들로 구성된 집사회 (Diaconate)를 둔다. 집사회는 집사 직분에 해당되는 업무만을 수행해야 한다. 집사회는 카운실에 업무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 35조 a항 보칙

카운실은 노회와 교단에 보낼 헌금(contributions)을 포함한 회중의 연간 예산을 책정하여 회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92 총회회의록, 711쪽)

(2020년 교단이사회 특별회기 수정안, 464쪽)

## 제 36조

a. 카운실, 당회, 그리고 집사회는 적어도 한 달에 한번씩 교인들에게 광고한 시간과 장소대로 모인다. 회의의 의장과 임원들은 각 모임에서 선출한다.

b. 카운실은 적어도 일 년에 네 번 직분자 상호 직무확인을 하여 직분자들의 직무 수행을 돕는다.

## 제 37조

카운실은 교회의 직분자 선출에 있어서 성도들의 협조를 구하는 일 외에도, 성도들의 감독과 징계에 관계된 일을 제외하고, 다른 중요한 일들에 관하여 성도들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서 카운실은 적어도 일년에 한 번씩 교인총회를 열어서 투표권이 있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투표하게 한다. 카운실이 교인총회를 주관하며 카운실이 제출한 안건만 심사한다. 제안된 안건들은 교인총회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하지만, 특별하게 법인규정과 부수 규정에 예외사항을 두지 않은 이상, 최종 결정과 그 결정을 수행하는 권위는 교회의 운영기관인 카운실에 있다

- 제 59조 b항, c항 참조

## 제 38조

a. 아직 카운실이 조직되지 않은 교회는 노회가 지정한 이웃교회 카운실의 감독 아래 있게 된다.

b. 카운실을 처음으로 조직할 때에는 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38조 b항 보칙 참조

c. 타교단의 교회가, 목회자와 사역팀의 전입을 포함하여, 북미주 개혁신교회에 가입하기를 희망할 때에 총회가 규정한 과정을 따라야 한다.

- 제 38조 c항 보칙 참조

d. 카운실과 교회가 해체하거나 미조직교회 상태로 돌아가려 할 때는 노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만약 재산의 분배가 필요하다면 교회와 카운실은 노회와 상의하여야 한다.

- 제 38조 d항 보칙 참조

e. 둘이나 그 이상의 카운실과 교회가 합병하려 할 때에는 노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f. 카운실이 교단으로부터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채택된 탈퇴 절차를 따라야 한다.

- 제38조 f항 보칙 참조

g. 본 교단의 교회는 노회 승인 하에 형제관계에 있는 다른 교회와 합병하여 연합교회 (union congregations)를 이룰 수 있다.

- 제38조 g항 보칙 참조

h. 본 교단의 교회는 노회의 승인과 총회대표의 동의를 얻어서 교단 차원으로 교류가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교단에 연합할 수 있다.

- 제 38조 h항 보칙 참조

비고: 제 38조 g항과 제 38조 h항의 일부표현이 2021 총회에서 개정여부를 다루게 된다.  
변경된 표현은 churches in ecclesiastical fellowship 을 churches in communion으로  
한국어번역본에서는 ‘교류가 있는 다른 교단’ 으로 번역하여 둘 간의 차이가 없게 번역하였다.

## 제 38조 b항 보칙

a. 일반적으로 교회는 최소 3년동안 존속하였어야 한다.

b. 해당 교회는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직분에 적합하고, 자신의 개인적이고 영적인 은사를 교회 지도자로서의 일과 교회의 사역에 헌신하려는 성도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

c. 해당 교회는 조직교회가 되기 전에 지속적인 발전과 목회의 효율성을 위하여 재물을 청지기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노회에 자립할 수 있는 능력과 헌신을 반영하는 재무상황을 생활비와 노회와 교단을 위한 헌금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제시한다.

d.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는 사역을 지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해당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과 기회를 가지고 선교사명을 감당할 지속적인 헌신의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2005 총회회의록, 762-63쪽)

(2020년 교단이사회 특별회기 수정안, 464쪽)

### 제 38조 c항 보칙

2016년도 총회는 북미주 개혁교회에 가입하려는 목사와 가입하려는 교회를 위한 세부적인 가입절차 과정을 수정하였다. 가입을 위한 절차와 과정을 담은 목회자후보위원회가 작성한 “교단가입절차”는 총회감독 지침서에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노회의 서기에게 전달되었다.

(2006 총회안건집 채택, 64-70쪽,

2006 총회회의록, 680쪽;

2016 총회회의록, 845쪽)

### 제 38조 d항 보칙

만약 교회의 등록교인의 수가 45명 이하로 줄어들 때, 교회에 지도력을 발휘할 성도의 수가 부족할 때, 더이상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없을 때, 또는 성장할 가능성이 없을 때 노회는 이러한 현상들이 해당 교회가 조직교회로 남아있어야 할지를 고려할 지표가 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2005년 총회회의록, 763쪽)

### 제 38조 f항 보칙

지역교회는 교단을 탈퇴할 때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 a. 교회의 카운실이 교단 탈퇴를 결의하면, 이 사실을 통상적으로 차기 노회 개최 시 노회에 통고해야 된다. 이 때 카운실은 탈퇴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된다.
- b. 통고를 받은 노회는 대표자들을 임명하여 카운실에 그 결의를 취소할 것을 설득해야 된다. 노회 대표자들은 카운실과 직접 만나서 카운실의 결정에 대하여 서면으로 반대를 표명하여야 한다. 카운실과 노회대표들 간의 만남은 양측이 계속 만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2개월 이상 지연해서는 아니 된다.
- c. 노회대표들이 카운실을 설득할 수 없고 카운실은 탈퇴 주장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카운실은 교인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 회의에서 카운실은 탈퇴근거와 노회대표들의 반론을 서면 자료로 설명해야 된다.
- d. 노회대표들은 탈퇴문제가 논의될 교인총회의 시간과 장소를 미리 통보 받아야 하며 이 자리에서 탈퇴하지 말 것을 회중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 e. 교인총회에서 토론 후 예비투표를 할 수 있다. 과반수가 탈퇴를 지지할 경우, 이 결의를 재확인하는 제2차 회의 날짜를 잡아야 한다. 이 때 날짜는 1개월 이상 1년 이내이어야 한다.
- f. 제 2차 회의에서도 탈퇴가 결의되면 카운실은 탈퇴 수순을 밟게 되고, 노회는 교단에 남아있기를 희망하는 성도들을 돌봐야 한다.
- g. 회중이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노회는 (상소하는 경우 총회가) 회중 안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파벌들 간에 분쟁을 해결해야 된다. 노회가 (상소하는 경우 총회가) 탈퇴결의를 받아들이면 탈퇴는 완결된다.

(1997 총회회의록, 613-614쪽)

## 제 38조 g항 보칙

### 연합교회 (union church)를 세우는 규정

1. 다음은 연합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교회들이 따라야 할 절차이다.
  - a. 북미주 개혁신교회 소속 \_\_\_\_\_ 교회는 연합을 결의하였는바, 이 연합은 각 교회 회중이 각 교회헌법에 정한 사전 통지와 정족수 요건에 맞게 소집되어 회의 참석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여야 한다. 또한 각 교회가 속한 노회가 이 연합을 승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 b. 교회연합의 목적은 성도들이 연합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독교의 신앙을 교육하고 선교와 구제사역을 행하기 위함이다. 연합회중은 연합교회의 부동산 및 동산을 함께 쓰며 목사의 사역을 함께 부양해야 된다.
  - c. 연합교회의 명칭은 \_\_\_\_\_이다.
  - d. 연합교회는 다음 r, s, u 및 v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각 교회의 교회헌법의 적용을 받는다.
  - e. 연합교회의 카운실은 연례적으로 그리고 요청이 있을 때에 제반 기록을 상위급 의결기구에 제출해야 된다.
  - f. 연합교회 성도는 연합하는 교회들에 출석하던 성도들 및 연합교회 카운실에서 받아들인 새 성도들로 구성한다.
  - g. 연합교회의 카운실은 총 성도 수를 연합한 교회의 숫자로 나눈 수로 계산하여 각 교회의 상위급 의결기구에 보고한다. 이런 숫자는 각 교회가 속한 총회의 회의록, 법령, 주소록 등에 반영된다. 이때 이 숫자는 연합교회가 보고한 것이라는 것과 현재 연합교회의 총 성도수는 몇 명이라는 내용의 주를 달아야 한다. 또한 연합교회 카운실은 교회 성장에 대한 추가 정보를 상위 의결기구에 각각 보고해야 된다.

- h. 처음에 연합교회의 직분자들 (장로와 집사들)은 연합하는 교회에서 현역으로 일하던 직분자들이어야 한다. 이들은 d, r, s 및 v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각 교회헌법에 따라 각자의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
- i. 항의 결과로 시행되는 헌법절차에 따라 교회연합이 유효한 날짜 다음에 소집된 첫번째 연차 연합총회에서 새 직원을 선출하고, h항에 규정된 직원들을 교체한다.
- j. 노회가 교회연합을 승인할 때부터 연합하는 교회 목사들의 목회활동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그러나 연합회중이 선출하면 연합교회의 목사로 임직될 수 있다.
- k. 연합교회의 목사(들)은 해당 교회가 속한 상회의 온전한 멤버가 되며 아래 s항의 규정에 따라 감독을 받는다.
- i. 연합교회는 주법(州法)에 허용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설립된 단체는 그 정관에 b, c 및 d항의 내용과 연합교회의 신앙고백규범을 포함시켜야 된다.
- m. 연합하는 교회의 모든 재산은 i항에 의해 새로 설립된 단체로 이전된다. 새 단체는 연합하는 교회법인의 승계자이므로 신탁재산이나 신탁설정으로 받은 금전을 관리한다. 연합하는 교회의 모든 부채는 연합교회가 승계한다. 교회법인설립이 금지된 주(州)에서는 그 주법(州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항이 의도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
- n. 단체 (또는 미조직 단체) 이사는 민사법에 따라 상기의 d항의 규정과 아래의 v항에 설명된 헌법규정에 따라 선출되어야 한다.
- o. 헌금자가 헌금이 쓰일 곳을 지정하는 기본적 권리는 인정된다. 한편, 연합교회의 카운실은 매년 일반적 선교나 구제사업 계획을 회중에게 제안해서 헌금을 공적사업에 고루고루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비율은 상위급 의결기구의 요청에 따라 카운실이 정한다.
- p. 연간예산에 포함된 노회와 총회를 지원하는 헌금은 전체 교인(communicant membership) 수에 따라 속한 교단들에 균등하게 나누어서 지불한다.
- q. 각 교단 헌법이 서로 일치될 때에는 헌법과 조화를 이루는 합의된 규칙을 따르고, 각 교단 헌법이 일부만 일치되는 경우에는 각 헌법의 필수규정과 조화를 이루는 합의된 규칙을 따르며, 각 교단 헌법이 서로 상충될 때에는 장로들이 합의한 규칙에 따라, 연합교회의 모든 성도는 장로의 처리를 받는다.
- r. 카운실의 조치에 불복해서 청원을 제기할 때에는 회중이 선택하는 하나의 의결기구에게만 제출하며, 계속해서 이어지는 청원 또는 불평도 회중이 처음 선택한 의결기구에 접수시켜야 한다. 최종 결정은 카운실과 회중에게 공히 구속력을 가진다.

- s. 목사는 카운실과 노회의 감독을 받는다. 만약 어떤 의결기구가 소송을 시작할 때 그 의결기구는 다른 교단들부터 위원들을 초청해서 협의를 공식화하고 주장하는데 동참시킬 수 있다. 목사가 청원할 경우, 교회가 청원을 접수시킨 가장 상위급 의결기구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다. 그 결정은 카운실에 구속력을 가진다.
- t. 목사는 연합하는 교회가 속한 교단들 중 한 교단의 연금제도에 가입한다. 이미 어떤 연금에 가입했다면 그 목사는 그 연금제도에 계속 남아있다. 아무 제도에도 가입하지 않았다면 그 목사는 어느 한 교단의 제도를 선택해서 가입해야 된다.
- u. 카운실이 취한 조치에 대하여 항의 또는 불평을 할 때에는 해당 항의를 제기한 사람이 선택한 한 교단의 헌법조항에 의거하여 제기할 수 있다. 일단 불평을 한 의결기구에 접수시키면 다른 교단은 그 사안에 대하여 재판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
- v. 어떤 문제에 대해 교단의 헌법규정들이 서로 달라서 한 교단은 허용하는 입장이고 다른 교단은 필수조항으로 규정했을 때, 그 필수조항이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 그러나 두 헌법이 그 문제를 모두 필수조항으로 규정했지만 그 입장이 서로 상치될 때 (q항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연합교회의 카운실은 차상급 의결기구에 요청해서 그 차상급 의결기구로 하여금 가장 상위급 의결기구의 권위 있는 해석을 얻거나 헌법 개정 등을 통해 상충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 w. 연합교회는 1년 이상, 2년 이내에 두 번의 교인총회를 개최하여 회중의 3분의 2의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소속된 노회들의 동의를 얻어서 해산할 수 있다. 연합교회가 해산할 경우 연합교회의 동산과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은 해당 노회들에 균등하게 분배한다.
2. 이 문서의 조항을 연합교회, 성도, 직분자와 목사에게 적용할 때를 제외하고 이 문서의 어느 조항도 본 교단의 헌법을 수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으로 추론해서는 아니된다.

(1998 총회회의록, 379쪽)

(2020년 교단이사회 특별회기 수정안, 464쪽)

## 제 38조 h항 보칙

본 교단과 교제를 가지고 있는 하나 또는 다수의 다른 교단에 가입하려는 교회는 아래의 가입과정을 따라야 한다:

- a. CRC 교단의 \_\_\_\_\_ 교회는 교단 가입을 위한 아래의 계획을 채택한다. 이 계획은 해당 교회가 공지한 정규회의에서 교회규칙에 규정된 정족수에 따라서 재적 3분의 2의 찬성으로 인준되고, 해당 교회가 속한 CRC 노회와 가입하려는 교단의 해당 회의가 가입의 계획을 승인하고 난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 b. 이 가입의 목적은 두 교단 또는 더 많은 교단들에 가입하려는 해당 교회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며, 전도와 구제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 c. 이 두 교단 또는 더 많은 교단들에 가입하는 교회의 이름은 \_\_\_\_\_ 교회이다.
- d. 두 교단 또는 다수의 교단에 가입할 해당 교회는 이하 m, n, p, 그리고 q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해당되는 각각의 교단 법을 따라야 한다.
- e. 카운실은 각 해당 교단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매년 출석하는 성도의 수와 다른 통계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 f. 조직교회인 경우, 직분자 (장로와 집사)는 가입할 당시에 직무에 있던 직분자들로 한다. 이 직분자들은 이하 d, m, n, p, 그리고 q에 규정된 책무를 감당한다.
- g. 조직교회가 가입한 이후에, 또는 개척교회가 두 교단 또는 다수의 교단에 가입한 교회로 조직되었을 때에 해당 교회가 채택한 규정에 따라서 직분자들을 선출해야 한다.
- h. 가입된 해당 교회의 목사(들)은 해당 각각 교단의 책임있는 정식 회원으로서 아래 n 규정에 따른 규율을 받아야 한다.
- i. 두 교단 또는 다수의 교단에 가입한 해당 교회는 교회 정관을 개정하여 b, c, 그리고 d에 규정된 내용과 해당 교단들의 신앙고백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 j. 교회 회원이 자신의 헌금과 기부를 어디로 보낼지를 결정할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지만, 두 교단 또는 다수의 교단들에 가입한 교회의 카운실은 각각 해당 교단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한 사역들에 공정하게 나누어지도록 하는 헌금에 관한 일반사역과 구제 프로그램을 교회에 매년 제시하여야 한다. 나누는 비율은 각 교단의 요청에 대한 카운실의 결정에 따른다.
- k. 연간예산에 포함된 노회와 총회를 지원하는 헌금은 교회의 등록교인 (confessing members) 수에 따라 계산하여, 각 해당 교단에 균등하게 나누어 각각의 노회와 총회에 지불한다.
- l. 교회의 모든 교인은 장로들의 훈련을 따라야 한다. 소속 교단들의 규정이 다른 경우에 다음의 규정을 따른다: 각 해당 교단들의 교회헌법과 규칙이 일치하는 경우에 그 동의하는 규정에 따라서, 한 교단의 교회헌법이 허용하고 다른 교단이 의무적으로 규정할 경우 후자의 규정에 조화롭게, 그리고 두 교단의 교회헌법이 상충될 때에는 장로들의 결정에 따른다.
- m. 카운실의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는 교회의 교인이 선정하는 오직 하나의 교단 노회로 제한하며, 이어지는 모든 이의와 항의는 그 원래 결정된 노회로 보내며, 거기서 확정된 결정은 카운실과 멤버들에 구속력을 가진다.
- n. 목사(들)에 대한 규율은, 한 교단이 목사의 규율에 관하여 심사를 시작하면서 해당 교발에 관하여 진술하고 고소를 진행함에 있어서 다른 교단의 위원회를 참여시킨다면, 그들이 안수를

받은 교단의 의결기구와 카운실의 규칙을 따른다.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는 고소를 시작한 교회에 제기하며, 그 교회의 가장 상위 기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그 결정은 카운실과 노회에 공히 구속력을 가진다.

o. 목사(들)은 그들이 안수를 받은 교단의 퇴직연금제도에 해당 필요조건에 따라 참여한다.

p. 카운실의 결정에 대한 항의와 고소는 해당 당사자가 선택하는 오직 하나의 교단의 교회헌법과 규칙에 따른다. 고소가 일단 한 교단의 의결기구에 접수가 된 후에 다른 교단은 해당 사항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q. 가입을 위한 계획 안은 1년 이상 그리고 2년 이하의 기간 안에 열린 두 개의 다른 교회회의에서 3분의 2의 투표를 거쳐서, 해당 노회의 동의를 얻어서 파기할 수 있다. 가입 안을 파기할 경우, 교회의 모든 재산, 동산과 부동산은 그것들은 구입할 때 또는 가입을 계획할 때 구성된 규칙에 따라서 나눈다. 문서화된 규칙이 없을 경우, 한 노회가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해당 재산은 노회들 사이에 공평하게 분배한다.

r. 교단들 사이에 교단헌법이나 규칙이 서로 다를 경우, 한 교단이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다른 교단이 허용하는 경우, 모든 사안에 있어서 의무규정을 적용한다. 교단들의 의무규정들이 서로 상충될 경우 (위의 규정 I의 경우를 제외하고), 두 교단 또는 다수의 교단들에 가입한 교회의 카운실은 상충되는 해당 교단들의 바로 위 의결기구에 요청하여 그들의 최상 의결기구에서 해당 문제를, 해석의 문제로서든지 아니면 교회헌법을 개정함으로써, 해결해 줄것을 건의한다.

s. 이 문서의 조항을 두 교단 또는 다수의 교단에 가입하는 교회, 성도, 직분자와 목사에게 적용할 때를 제외하고 이 문서의 어느 조항도 본 교단의 헌법을 수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으로 추론해서는 아니된다.

비고: 제 38조 g항과 제 38조 h항의 일부표현이 2021 총회에서 개정여부를 다루게 된다.

변경된 표현은 churches in ecclesiastical fellowship 을 churches in communion으로 한국어번역본에서는 ‘교류가 있는 다른 교단’으로 번역하여 둘 간의 차이가 없게 번역하였다.

(2015 총회회의록, 648-49쪽)

(2020년 교단이사회 특별회기 수정안, 464쪽)

(2021 총회회의록 수정, \_\_\_\_쪽)

## C. 노회

### 제 39조

노회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복미주 개혁신교회 들의 모임이다. 서로간 지원하고 서로에게 책임 지고, 지역에서 요구하는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길을 모색하며, 전체 교단과 건강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도록 돕는다. 노회는 이웃한 교회들의 모임으로 구성된다. 새로운 노회의 조직과 노회의 관할변경은 총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 제39조 보칙 참조

### 제 39조 보칙

노회는 회계담당자를 통하여 노회와 교단의 기금을 수령하고 지출할 책임을 지닌다. 이 때 부유한 교회가 가난한 교회를 돕는 원칙을 가지고 수행한다.

(1992 총회회의록, 711쪽)

교회가 다른 노회로 소속을 옮기려 요청할 때 단순히 지리적인 요인 이상의 근거가 있을 수 있다. 총회는 그러한 요인을 고려하여 해당 요청을 처리할 수 있다.

(1996 총회회의록, 561쪽)

### 제 40조

a. 각 교회 카운실은 목사 한 명, 장로 한 명, 그리고 집사 한 명을 노회에 총대로 파견한다. 교회에 목사가 공석이거나 목사가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목사를 대신하여 다른 장로를 파견한다. 정식 총대가 아닌 직분자일지라도 노회에 참석해서 권고발언을 할 수 있다.

- 제40조 a항 보칙 참조

b. 노회는 거리가 먼 관계로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적어도 4 개월마다 모인다. 그 모이는 시간과 장소는 직전 노회에서 결정한다.

- 제40조 b항 보칙 참조

c. 노회의 사회는 목사들이 순번제로 하든지, 혹은 총대 주에서 의장을 선출함으로 진행한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동일한 사회자가 두 번 계속해서 선출되서는 아니된다.

- 제40조 a와 c항 보칙 참조



## 제 40조 a항 보칙

a. 거리가 먼 이유나 다른 중요한 이유로 한 교회가 세 명의 총대를 노회에 파송하기 어려운 경우에 두 명을 파송할 수 있다.

b. 노회에 파송하는 총대의 성별에 관한 사항은 헌법 3조a항 보칙에 관한 해당 노회의 결정에 따른다. 여성 총대의 참여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위배로 이해하는 총대는 그들의 항의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 노회의 각 공식 회의록에는 그들의 이름과 항의를 기록으로 남긴다. 노회가 원할 경우에 개척교회로부터 세 명의 직분자를 노회에 초대할 수 있다.

(1997 총회회의록, 621쪽)

(2007 총회회의록 수정, 612쪽)

(2009 총회회의록 수정, 613쪽)

(2015 총회회의록 수정, 657쪽)

## 제 40조 b항 보칙

총회감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노회의 결정은 노회가 진행되는 동안 노회의 멤버인 각 교회의 총대가 참석해 있는 상태에서 내려야 한다. 만약 총회감독이 동의하여야 할 임시노회를 개최할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임시노회는 소속교회 절반 이하가 모여서는 안된다. 이 경우의 정족수는 노회 소속 교회의 절반에 하나를 더한 숫자로 한다.

(2000 총회회의록, 668쪽)

## 제 40조 a항 및 c항 보칙

### 레드 메사 노회 소속 교회를 위한 수정

a. 각 교회 카운실은 총대로 목사 1명, 장로 1명, 그리고 집사 1명을 노회에 총대로 파견한다. 교회에 목사가 공석이거나, 목사, 장로 그리고 집사 총대가 참석할 수 없을 경우, 어떠한 조합이라도 직분자 총대 3명을 파견할 수 있다. 총대가 아닌 직분자도 노회에 참석해서 권고발언을 할 수 있다.

c. 노회의 의장은 노회에 소속한 직분자 중에서 선출된다.  
통상적으로 동일인이 두 번 연속으로 의장으로 선출될 수 없다.

(1981 총회회의록, 16쪽)

(2015 총회회의록 수정, 657쪽)

## 제 41조

교회를 돕기 위해서 노회는 교회의 요청에 응답하는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야 하며, 적어도 일년에 한번은, 교단 내 교회들의 사역과 삶에 특별하게 중요한 목회적 사안을 논의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야 한다.

- 제41조 보칙 참조

## 제 41조 보칙

총회는 노회 소속증명(Classical Credential Form)에 다음의 문장을 첨가함으로써 그 문서를 수정하였다:

우리는 우리 교회의 카운실이 북미주 개혁신교회의 신조에 충실하며 우리 회중 내와 함께 커뮤니티와 노회와 교단의 목회, 그리고 하나님의 광범위한 나라에 성실하고 효과적으로 임하고 있음을 증거한다.

## 제 42조

a. 노회는 각 교회와 목사에게 권면할 사람을 지명해야 한다. 노회는 매년 산하 교회를 방문할 시찰위원을 지명해야 한다. 노회는 노회 카운슬러를 지명하여 말씀의 사역자를 청빙하려는 교회를 자문하게 하여야 한다. 노회는 지역 자문목사를 지명하여 목사와 전도목사를 돕게 하여야 한다.

b. 시찰위원은 경험과 상담할 능력을 갖춘 직분자로 구성된 한 명 혹은 복수의 팀으로 구성한다. 각 시찰회는 한 명의 목사와 적어도 한 명의 다른 직분자를 포함한다. 시찰위원은 교회 직분자가 성실히 그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지, 건전한 교리를 고수하고 있는지, 교회 헌법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잘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임무를 갖는다. 각 교회는 교회에 발생한 중대한 문제들을 해결하며 시찰위원의 조언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나 시찰위원을 초청할 수 있다. 시찰위원은 그들의 사역을 노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 제42조 b항 보칙 참조

c. 노회의 카운슬러는 목사를 청빙하는 과정에 있는 교회가 교회의 제도와 과정을 잘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는 임무를 갖는다. 카운슬러는 직분자이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목사를 청빙하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소속의 목사가 담당한다. 노회의 카운슬러는 목사를 청빙하는 과정이나 후에 서면으로 노회에 보고한다.

d. 지역 자문목사의 임무는 모든 목사를 돕고 격려하며, 새로 CRC에서 안수받은 목사가 멘토와 연결되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 제42조 d항 보칙 참조

## 제 42조 b항 보칙

총회는 노회로 하여금 시찰위원 방문의 중요성을 강조하도록 하며, 노회에 소속된 회중의 영적인 건강함과 활력을 유지하는 것의 가치를 일깨우고, 교회 시찰위원 활동 지침서 ([www.crcna.org](http://www.crcna.org) 에서 볼 수 있다)과 또는 목회자-교회 지원부에서 제공하는 다른 자료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2009 총회회의록, 596쪽)

## 제 42조 d항 보칙

1. 지역 자문목사는 특정한 임기와 함께 임명된다.
2. 지역 자문목사는 목회자-교회 지원부와 협력하여 임명한다.
3. 지역 자문목사의 경비는 보통 노회가 부담한다.
4. 지역 자문목사는 매년 노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목회자-교회 지원부에 사본을 보낸다.
5. 교재개발과 훈련을 포함한 지역 자문목사 프로그램은 목회자-교회 지원부에서 전체를 감독한다.
6. 지역 자문목사는 총회의 결정에 따라, 멘토를 선정함으로써 새로 안수받은 목사를 돕는다.
  - a. 모든 목사 후보자는 안수받을 때 멘토와 연결된다. 새로 안수받은 목사는 사역의 첫 5년 동안 멘토의 도움을 받는다.
  - b. 헌법 제 7조, 8조 또는 제 14조 e항 에 따라 북미주 개혁신교회에 가입한 모든 사람은 사역의 첫 5년간 필히 멘토와 연결되어야 한다.
  - c. 어느 목사라도 멘토를 요청하면 멘토와 연결될 것이다.

(1982 총회회의록 채택, 78쪽;  
2019 총회회의록, 757쪽)

## 제 43조

- a. 각 노회는 신학생 장학위원회와 노회 고시위원회 (CMLT)를 운영하여 복미개혁 교회에서 목회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격려하여야 한다.
- b. 노회는 은사를 가지고, 지식이 풍부하며, 거룩한 삶으로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는 자에게 해당 노회의 한도 안에서 권면할 권한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사람의 봉사가 긴급히 필요하게 될 때에 노회는 그들을 심사한 후 제한된 기간 동안 권면자로서 인허한다.

## 제 44조

- a. 노회는 다른 노회들과 더불어 공동 관심사를 의논하며 공동 행동을 취할 수 있다.
- b. 공동 관심사를 수행해 나가려는 노회들은 서로 연합하여 각 노회로부터의 대표를 파견하고 회의 일정을 정하는 등 노회 차원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이러한 새 모임의 권한과 영역과 임무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공동체는 그 임무에 관한 모든 면에 있어 총회와 직접적인 연계를 갖는다.

## D. 총회

## 제 45조

총회는 모든 노회에 속한 교회를 대표하는 기구이다. 각 노회는 목사 1명, 장로 1명, 집사 1명, 그리고 다른 직분자 1명을 총회에 총대로 파송한다.

- 제45조 보칙 참조

## 제 45조 보칙

### a. 교단의 기금

1. 총회는 교단 사역기관의 연간 예산을 심의한다.
2. 매년 총회 후 교단직원은, 국가의 규정을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교단 헌금을 서약하는데 참고할 지침을 담은 편지를 보낸다.

(1992 총회회의록 채택, 711쪽)

(2020년 교단이사회 특별회기 수정안, 464쪽)

### b. 총회에 파견한 총대의 선정과 총회대표의 선정에 관한 규칙

1. 여성이 총회에 총대로 또는 총회대표로 선정되거나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으로 믿는 총대는 총회 교적증명에 그들의 반대의사를 표할 수 있다. 그들의 반대의사와 함께 그들의 이름이 총회의 회의록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조직교회에서 홀로 목회하는 전도목사도 총회에 목사 총대로 파견될 수 있으며 또한 교단 내에서 일반적으로 목사들이 활동하는 기능에서 섬기도록 추천될 수 있다.

(2007 총회회의록, 612, 665쪽)

(2009 총회회의록 수정, 613-14쪽)

3. 개척교회에서 사역하는 전도목사나 부교역자도 총회에 장로 대표로 파견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장로가 수행했던 교단의 다른 사역에 임명되어 일할 수 있다.

(2013 총회회의록 수정, 559-60쪽)

## 제 46조

a. 총회는 매년 모이며, 그 시간과 장소는 그 직전 총회에서 결정한다. 각 총회는 다음 총회를 소집하는 교회를 선정한다.

b. 소집하는 교회는 북미주 개척교회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총회에 특별한 모임을 소집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이것은 매우 특별한 상황에서 총회의 규정을 따라서 행해질 때만 가능하다.

c. 총회의 임원은 총회 규정에 따라 선출되며 정해진 직분을 수행한다.

## 제 47조

총회의 임무에는 신조, 교회헌법과 예배의 원리와 요소 채택을 포함한다. 총회는 예배의식, 찬송가, 그리고 예배에 사용되는 적합한 성경 번역을 승인한다. 이러한 사안에 대한 변경 청원이 있을 경우 교회들이 사전에 이러한 변경 청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기까지 총회의 결정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 제47조 보칙 참조

비고: 제 47조는 2021 총회에서 Psalter Hymnal을 Hymnals로 개정하는 안이 다뤄질 것이다. 다만 수정부분은 한국어 번역에는 차이가 없다.

## 제 47조 보칙

### 헌법 제47조에 관한 부속 규칙

a. 중요한 변경사항이라 함은 신조의 중요한 의미나 헌법 조항의 의미를 바꾸거나, 예배의식이나 찬송가나 예배의 원리나 요소들을 변경하거나 성경 번역본을 달리 채택해서 교회의 예배 규정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내용을 바꾸려고 건의하는 위원회는 변화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바꾸고자 하는 내용이 중요한 변경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설명하여야 된다.

b. 사전에 검토할 기회라 함은 중요한 변경을 채택하기에 앞서 교회와 노회가 총회에 제안이나 기타 의사전달 과정을 통해 변경 요청을 충분히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적 여유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연구위원회 보고서는 총회가 소집되기 전 해 11월 1일까지 접수되기 때문에, 교회와 노회는 연구위원회 보고서의 형식을 가지고 사전에 검토할 기회를 갖는다. 보통 상임위원회 보고서나 제안을 검토할 경우, 교회와 노회는 사전에 심의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 왜냐하면 인쇄된 총회안건집을 회의 시작 2개월 전에, 무엇보다 대다수의 노회가 총회 준비회의를 이미 끝마친 시기에 받기 때문이다.

c. 교회와 카운실이 중요한 변경사항을 사전에 심의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면 그 안건은 차기 총회에 상정시켜 타당성을 검토해야 된다. 총회에서의 최초의 결의는 제안할 것을 결정함으로 이해되며, 차기 총회의 결정은 채택을 결의한 것으로 이해된다.

1) 한 총회에서 제안할 것을 결정한 변경사항은 차기 총회에서 채택될 때까지 시행되지 않는다. 채택되기 전까지는 다른 총회 결의에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

2) 한 총회에서 변경할 것을 제안한 것은 연구위원회 건의서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변경을 제안하는 총회는 한 사람이나 복수의 사람들을 지정해서 그 회기에 변경 안건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변경안건과 설명자는 건의서 및 총회 연구위원회의 제안과 그 대변자와 동등한 권리와 특권을 가진다.

3) 제안된 변경이 차기 총회에서 기각될 경우, 그 안건 또는 유사한 안건을 다시 처음부터 제안하기 전에는 차차기 총회에서 채택될 수 없다.

d. 헌법 보칙의 변경은 상기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다.

(1995 총회회의록, 755-56쪽)

(1996 총회회의록 수정, 500쪽)

## 제 48조

a. 노회의 지명에 의하여 총회는 각 노회에서 목사 한 명씩을 총회대표로 임명하여 총회가 지정한 기간동안 봉사하게 한다.

- 제48조 a항 보칙 참조

b. 교회헌법에 규정된 대로 총회감독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가장 가까운 노회들에서 최소한 세 명의 총회감독이 출석하여야 한다.

c. 총회감독의 직무는 별도로 규정된 사항 외에도, 노회들이 어려움에 처해있을 때에 요청에 따라서 적절한 화합, 질서, 건전한 교리를 유지하도록 돕는다.

d. 총회감독은 자신의 활동을 다음 총회에 종합적으로 보고한다.

## 제 48조 a항 보칙

노회는 인접한 노회의 상황을 고려하여 여성 목사를 총회감독으로 일하도록 지명할 수 있다. 이때에는 남성 목사를 대체 대표로 두어야 한다.

(2007 총회회의록, 612쪽)

## 제 49조

a. 총회는 한 위원회를 임명하여 북미주 개혁신교회가 다른 교단들과 교제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연합을 촉진하도록 한다. 이러한 관계는 총회가 인준한 북미주 개혁신교회의 교회연합 교단명단 (Ecumenical Charter of the Christian Reformed Church)에 기재된 개혁신교단과의 연합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하다.

b. 총회는 북미주 개혁신교회가 어떠한 교단과 교류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교단과 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연합기구에 북미주 개혁신교회가 가입하여, 중요하게 참여하고 있는지를 표명하여야 한다.

비고: 제 49조 b항의 일부표현이 2021 총회에서 개정여부를 다루게 된다. 개정안은 ecclesiastical fellowship, the churches with whom the Christian Reformed Church is in dialogue 를 communion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한국어번역본에서는 ‘교류가 있는 다른 교단’으로 번역하여 둘 간의 차이가 없게 번역하였다.

## 제 50조

- a. 총회는 북미주 개혁교회가 다른 기독교 교단, 특별히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교회 연합체에 대표를 파견한다.
- b. 총회는 이와 같은 연합체에 전세계 교회들의 결정을 요하는 사항들을 제안할 수 있다.
- c. 교회 연합체들의 결정은 본 교단의 총회가 인준할 때에만 본 교단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

## III. 교회의 임무와 사역

### A. 예배

## 제 51조

- a. 교회는 한 주일에 보통 두 번씩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례에 참여하며, 찬송과 기도를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린다.

- 제 51조 a항 보칙 참조

비고: 제 51조 a항, b항이 2021 총회에서 개정여부를 다루게 된다. 현행 제 51조 b항, c항은 제 51조 c항, d 항으로 바뀐다. 제51조 a항은 삭제된다.

- a. 교회는 한 주일에 보통 한 번씩 (~~두 번씩~~)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례에 참여하며, 찬송과 기도를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린다.
- b. 각 노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전략적 사역계획의 일환에 포함시키도록 권면함으로써 교회의 주일 두번째 모임에서 갖는 예배, 학습, 기도, 교제 등 풍성한 전통을 확인해야 한다.
- b. 성탄절, 성금요일, 부활절, 승천일, 오순절, 그리고 보통 송년과 신년, 연례 기도일과 감사주일 등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 모임을 가진다.
- c. 교회, 국가, 세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복된 일이 있을 때에 특별 예배를 선포할 수 있다.

## 제 51조 a항 보칙

- a. 총회는 주일에 예배를 두 번 드리는 귀중한 전통을 옹호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기 위해 기성 교회는 이 전통을 계속 유지하고 새로 형성되는 교회는 이 전통을 따를 것을 권고한다.



b. 교회가 저녁예배의 대안을 고려하려 할 경우, 총회는 그 교회에 고려하는 대안이 소속 노회의 감독을 받는 중요한 목회의 일부이어야 함을 분명히 할 것을 권고한다.

(1995 총회회의록, 766-767쪽)

## 제 52조

a. 당회는 예배의식을 관할한다.

b. 당회는 총회가 승인한 예배 형식의 사용, 찬송가, 교회에서 승인한 성경번역을 포함한 예배의 원리와 요소들을 준행하는지 살펴야 한다. 예배 형식을 변형하거나 다른 찬송가나 복음송을 더할 때에 이러한 요소들은 총회의 지침에 적합해야 한다.

- 제52조 b항 보칙 참조

## 제 52조 b항 보칙

- 총회가 권장하는 예배에 사용할 성경번역은 웹사이트 [www.crcna.org](http://www.crcna.org)에 실려 있으며 거기에는 King James Version (KJV), the American Standard Version (ASV), the Revised Standard Version (RSV), the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 the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NRSV), Today's New International Version (TNIV), the English Standard Version (ESV), 그리고 the New Living Translation (NLT)를 포함한다.

- 총회가 인정하는 예전, 찬송가, 그리고 예배의 요소들은 교단의 최근 찬송가 (1987년도)에 실려 있다. 예배의 형식 그리고 수정된 것을 총회에서 인준한 형식과 같은 다른 자료들은 교단의 웹사이트인 [www.crcna.org](http://www.crcna.org)에서 총회 자료 (Synod Resources)에서 찾을 수 있다.

- 예배 형식 변경에 관한 총회의 지침은 1994 총회회의록, 493-44쪽 그리고 교단 운영교본 (*Manual of Christian Reformed Church Government*)에서 찾을 수 있다.

- 예배와 음악에 관련된 원리, 요소와 지침은 교단의 최근 찬송가 (1987년도)의 11-13쪽의 시편송, 복음송, 그리고 찬송가에 대한 설명 "Introduction to the Psalms, Bible Songs, and Hymns"과 1997 총회회의록, 664-68쪽, 혹은 교단 웹사이트 [www.crcna.org](http://www.crcna.org) 의 총회 자료 (Synodical Resources) 에 있는 1997년 예배연구 위원회의 보고서에서 찾을 수 있다.

## 제 53조

a. 예배의식은 목사나 당회가 지명한 사람이 인도한다.

b. 예배의식은 설교 인허를 받은 사람과 설교를 낭독하도록 당회로부터 지명받은 사람이 인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당회가 승인한 설교만 예배에서 낭독하고 목회의 모든 공식적인 사역은 참가해야 한다.

- 제53조 보칙 참조

## 제 53조 보칙

### 목회의 공식적인 사역

- 1) 말씀의 설교, 성례의 집행, 성도를 향한 축도, 새로운 임직자 안수, 교인의 영입과 보냄 등을 포함하는 목회의 독특한 수행은 성도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의 일부로서 교회에 위임되었으며 교회 안에서는 특정한 직분이 아닌, 안수받은 지도자들에게 위임되었다.
- 2) 역사가 짧은 조직 교회가 안수받은 목사나 전도목사를 부양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예전적 활동에 도움받기를 포기할 수 없다.
- 3) 이러한 목회수행은 주님과 지도자와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상징하고 충실하게 한다. 그러한 사역은 교회를 튼튼히 세울 목적으로 주님께서 지도자들에게 맡기신 성역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목회수행은 교회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2001 총회회의록, 504쪽)

## 제 54조

a. 말씀의 선포는 교회의 예배의 중심으로 신조와 신앙고백에 의하여 인도되어야 한다.

비고: 2019년 총회에서는 제 54조 b 항을 삭제할 것을 제안하였고, 2021년 총회에서 다뤄질 것이다.

b. 매 주일의 두 예배 중 하나에는 일반적으로 목사가 신조와 신앙고백에 요약되어 있는, 특별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요약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한다.

## 제 55조

성례는 공식 예배 시 당회의 권한에 근거하여 규정된 양식 또는 총회지침에 맞게 각색된 양식을 따라 목사, 전도목사,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노회의 허락을 받은 안수받은 직분자가 시행한다.

- 제55조 보칙 참조

## 제 55조 보칙

- a. 안수받은 직분자가 성례를 집행하려면 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b. 이 경우 일반적으로 안수받은 직분자는 장로여야 한다.

(2002 총회회의록, 537쪽)

## 제 56조

믿는 가정의 자녀는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인침을 받게 한다. 당회는 이러한 세례의식이 가능한 한 신속히 요청되고 실시되도록 조처한다. 세례를 받은 자녀는 “세례받은 멤버”로 인정된다.

## 제 57조

세례 받지 않는 성인은 공적 신앙고백을 거쳐서 세례식을 거행한다. 이러한 공적 신앙고백에는 성인세례 양식을 사용한다.

## 제 58조

다른 기독교 교단으로부터 이적해 온 교인의 경우 그가 그 교단에서 적법하게 위임받은 자에 의해서 성삼위 일체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그 세례는 유효하다.

## 제 59조

a. 자신의 나이와 능력에 적합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진 모든 세례교인 (baptized members)은 성만찬에 초대되며, 당회의 감독하에서 자신의 나이와 능력에 따라 적합하게 성만찬에 참여함에 따르는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도록 요구된다.

b. 세례교인은 공식 예배서식에 준비된 양식을 사용하여 공적 신앙고백을 하도록 권고한다. 이 공적 신앙고백에는 북미주 개혁신교회의 신조와 신앙고백에 대한 서약을 포함한다. 공적 신앙고백을 하기 전에 그들은 자신의 신앙, 삶과 신조에 대해서 적합한 증언을 장로들에게 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그들이 공적 신앙고백을 하기 적어도 한 주 전에 그들의 이름을 교회에 공포하여서 승인을 받도록 한다. 공적 신앙고백을 한 사람은 곧 “등록교인” (confessing members)으로 인정된다.

c. 등록교인은 교인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권리에는 자녀가 세례를 받도록 함, 회중 모임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직분을 가질 수 있는 자격요건을 포함하며, 여기

적은 내용에 제한되지 아니한다. 책임에는 지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일반교회의 사역과 삶, 그리고 상호훈련에 참여함을 포함한다.

- 제59조 c항 보칙 참조

d. 다른 북미주 개척교회로부터 이전해 온 등록교인은, 그들의 신앙과 삶이 건전하다는 교인 증서를 제출함으로, 동일하게 인정된다.

e. 북미주 개척교회와 교단적 교류를 가지는 다른 교회로부터 이전해 온 등록교인은, 이전 교회의 교인증서나 편지를 보고 당회가 그의 신앙과 삶에 만족할 때에, 등록교인으로 인정된다.

비고: 제 59조 e항의 아래 수정안은 2021 총회에서 개정여부를 다루게 된다. 개정안은 ecclesiastical fellowship, the churches with whom the Christian Reformed Church is in dialogue 를 communion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한국어번역본에서는 ‘교류가 있는 다른 교단’으로 번역하여 둘 간의 차이가 없게 번역하였다.

f. 다른 교단으로부터 이전해 온 성도는 당회가 그들의 신앙과 삶에 관하여 검사한 후에 등록교인으로 인정된다. 당회는 이러한 각각의 경우에 관하여 그들을 직접 받아들이거나 또는 공적 신앙고백을 통하여 받아들일 것인지를 결정한다. 그들의 이름은 회중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공개되어야 한다.

## 제 59조 c항 보칙

각 교회는 등록교인으로서 교회의 권리와 책임을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적합한 나이를 결정한다.

(2011 총회회의록, 829쪽)

## 제 60조

성찬식은 적어도 3 개월에 한 번씩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 제 61조

예배의 공중기도는 찬양, 고백, 감사, 간구와 중보기도를 포함한다.

## 제 62조

예배의 한 부분으로 금전적이거나 다른 방식으로 헌신할 기회를 정기적으로 주어서, 지역 공동체 안에서 교회의 사역을 개발하고 유지하며, 연합함으로 교단의 국제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가 지지하는 다른 사역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한다.

## B. 신앙 성장

## 제 63조

a. 각 교회는 그 교회뿐 아니라 지역에 속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구세주로 믿도록 신앙과 신뢰심을 양육하고, 그들이 성만찬에 충실하게 참여하도록 하며, 그들이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며, 교회와 세상에 있어서 성도로서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사역을 행한다. 이러한 양육사역은 그들을 사랑으로 받아드리고, 위하여 기도하며, 신앙을 가르치며, 성도의 교제 안에서 그들을 격려하고 붙들어 줄 때 가능하다.

b. 각 교회는 청소년들에게 성경과 교회신조와 신앙고백, 특히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가르쳐야 한다. 이 교육은 당회의 감독을 받는다.

## 제 64조

a. 각 교회는 성인 성도로 하여금 주 예수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성숙해지도록, 성도간의 교제를 권장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교회와 세상에서 실천할 소명을 성취할 수 있도록 목양사역을 한다.

b. 각 교회는 성인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 교육은 당회의 감독을 받는다.

## C. 목양

## 제 65조

직분자들은 모든 성도들과 그 외 모든 필요한 이들에 사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방문과 함께 영적인 멘토링과 개인적인 접촉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이 신앙으로 살도록, 신앙고백이나 삶에 실족한 사람을 격려하고,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돕는다.

## 제 66조

a. 등록교인이 본 교단에 속한 다른 교회로 옮기거나 본 교단과 교류 관계를 가지는 교회로 옮기면, 본인의 교리와 생활에 관한 증명서를 카운실로부터 교부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증명서를 요구하면 그 증명서는 보통 새 거주지의 교회로 우송된다.

b. 세례 교인이 본 교단의 다른 교회로 옮기거나 본 교단과 교류 관계를 가지는 교회로 옮기면, 요청에 따라서 유아 세례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그 세례증명서에는 필요한 기록이 첨부되며 이 증명서는 새 거주지 교회로 우송한다.

비고: 제 66조 a항, b항의 일부표현이 2021 총회에서 개정여부를 다루게 된다. 개정안은 ecclesiastical fellowship, the churches with whom the Christian Reformed Church is in dialogue 를 communion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한국어번역본에서는 ‘교류가 있는 다른 교단’으로 번역하여 둘 간의 차이가 없게 번역하였다.

c. 교회의 증명서에는 그 카운실의 회장과 서기가 서명한다.

## 제 67조

교인이 본 교단 소속교회나 본 교단과 교류 관계를 가지는 교회도 없는 지역으로 이주할 때, 요청에 따라 교인자격을 원래 거주지 교회에 보류하거나, 새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본 교단 소속교회로 증명서를 보낼 수 있다.

- 제67조 보칙 참조

비고: 제 67조의 일부표현이 2021 총회에서 개정여부를 다루게 된다. 개정안은 ecclesiastical fellowship, the churches with whom the Christian Reformed Church is in dialogue 를 communion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한국어번역본에서는 ‘교류가 있는 다른 교단’으로 번역하여 둘 간의 차이가 없게 번역하였다.

## 제 67조 보칙

### 소멸된 교적에 관한 규칙

1. 총회의 규정에 의하면 세례 및 등록교인이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이사를 갈 경우, 교인이 요청하고 당회가 동의하면 그 교인은 다니던 교회의 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만약 그 교인이 그런 요청을 하지도 않고 이사간 뒤 교회에 출석하지도 않을 경우, 당회는 잘못을 고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한 후에 그 교인이 교회를 떠난 날로부터 2년의 기간이 지난 후 교인자격이 소멸되었음을 선언할 수 있다. 당회는 가능하면 그 교인에게 자격소멸을 알려야 한다. 그러나 이 규칙은 임시로 집을 떠나 있는 교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

2. 이 규칙은 1881년도 규칙 및 1910년도 규칙을 대체한다.

(1974 총회회의록, 81-82쪽)

### 출석하지 않거나 지원하지 않는 교인의 교적 소멸에 관한 규칙

세례 및 입교 교인으로서 지난 2년 동안 이주하지 않았는데도 자신의 교적이 있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헌금의 의무도 수행하지 않았다면, 당회는 그의 교적이 소멸되었다고 선언할 수 있다고 총회는 결의하였다. 이 때 아래와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 a. 교인 본인은 아직도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
- b. 교인 본인은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주장한다.
- c. 당회는 그 교인에게서 징계할만한 공적인 죄를 발견할 수 없다.

당회는 해당 교인의 교적 소멸에 관하여 회중에게 적절하게 공표해야 되며 이를 당사자에게도 통고해야 된다.

(1976 총회회의록, 25쪽)

### 제 68조

각 교회는 모든 교인의 출생, 사망, 세례, 공중 신앙고백, 교인의 전입과 전출, 출교와 기타 교적의 상실에 관한 모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 제 69조

- a. 당회는 그 영적인 목회 하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만 결혼하도록 가르치고 권고해야 한다.
- b.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교회의 공적 의식에 규정된 대로 합당한 권면, 약속 및 기도로써 엄숙하게 거행되어야 한다. 결혼식은 예배 또는 친척과 친구들이 모인 사적 집회에서 거행될 수 있다.
- c.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결혼예식을 목사가 주례해서는 안 된다.

— 제69조 c항 보칙 참조

### 제 69조 c항 보칙

2016년도 총회가 교회에 권고하는 목회 지침은 동성결혼에 관련된 목회 가이드라인 연구 위원회의 소수 리포트에서 볼 수 있다 (*Agenda for Synod 2016*, pp. 436-43). 2016년도 총회의 목회 지침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결혼이라고 총회가 결정하는 하나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 제 70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치루는 장례식과 기념예배는 우리의 신앙에 대한 확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거행되어야 한다. 그러한 시간들은 가족을 잃은 성도들을 사랑하고, 위로하며, 신앙의 확신과 소망을 주는 기회를 제공한다.

## 제 71조

카운실은 교인들이 좋은 기독교 학교들을 세우고 유지하고, 부지런히 격려하여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온 세상에 미친다는 성경적이며 개혁주의 비전을 가르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부모들로 하여금 언약에서 요구되는 대로 그 자녀들이 이와 같은 기독교 학교에서 교육 받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한다.

## 제 72조

카운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기도하고, 교제와 양육과 섬김을 가르치는 모임을 권장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 D. 교회사역

## 제 73조

교회는, 열방을 제자 삼으라는 지상명령에 기꺼이 순종하여, 말과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증거할 소명을 받았다.

## 제 74조

a. 각 교회는 그 지역 사회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 각 지역교회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세상에 온 것을, 치유하고 화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살 것을, 회개와 신앙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새 삶을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도록 전파하고 보여야 한다.

b. 카운실은 교회가 이러한 독특한 전도와 구제사역을 성취할 수 있도록 비전을 개발하고 훈련을 지도하여야 한다. 교회는 이웃한 교회들과 연합하여 사역하고, 지역사회의 적합한 재원을 활용하며, 노회와 교단의 재원을 활용하며, 이러한 사역들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께서 부여하신 다른 은사들을 활용하여야 한다.

c. 카운실은 성도들로 하여금 교단과 노회의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재원을 제공하도록 격려하여야 한다.



d. 각 교회는 집사들과 장로들이 그들 각각의 사역을 성취할 수 있도록 사역의 구조와 계획에 적합하게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 75조

a. 노회는 해당 지역에서 전도와 구제사역을 감당하여서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증거하도록 사역 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 노회는 지역교회들이 그들의 사역을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b. 각 노회는 집사들과 장로들이 그들 각각의 사역을 성취할 수 있도록 사역의 구조와 계획에 적합하게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 76조

a. 총회는 교회들과 노회들을 격려하고 지원하므로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에 대한 증거를 말과 행동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한다. 총회는 교단 사역들을 지정하여서 교회와 노회들로 하여금 지역적이고, 국내적인, 국가간, 그리고 국제적인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한다.

b. 총회는 집사들과 장로들이 그들 각각의 사역을 성취할 수 있도록 사역의 구조와 계획에 적합하게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 77조

총회는 북미주 개혁신교회 운영핸드북과 중앙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서 교단의 사역들을 운영하여야 한다.

### IV. 교회의 훈계와 징계

#### A. 일반규정

#### 제 78조

교회의 훈계와 징계의 목적은 실족한 자를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순종으로, 교회의 풍성한 교재로 회복시키므로 궁극적으로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데 있다.

#### 제 79조

a.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교리와 삶에 있어서 서로에 대해 책임을 지며, 사랑 가운데서 서로 격려하고 훈계할 책임을 가진다.

b. 당회는 성도 상호간에 책임을 지고, 편애하거나 편파적이지 않도록, 분파를 만들거나, 이기적이 되지 않도록 상호 용납하고 용서하며, 특별히 고린도전서 11:27-29에 기록된대로 성만찬에 관련하여, 한 몸의 일치를 이루도록 목회한다.

c. 당회는 성도들에게 이 책임을 가르치고 주지시키며, 성도의 교제를 통해 사랑과 관대한 마음을 양육함으로 실족한 성도가 회개하여 다시 화해될 수 있도록 한다.

## 제 80조

공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죄에 대하여 그리고 마태복음 18:15-17의 원리에 따라서 당회로 보고된 죄에 대하여 당회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에 위임하신 권위를 행사하여야 한다.

## B. 교인에 대한 훈계와 징계

### 제 81조

a. 교인이 교리나 생활에서 범죄했을 때에 당회의 처리를 신실하게 받아야 하며, 그 후에도 계속하여 범죄할 때에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교적이 상실된다.

b. 등록교인으로서 교적이 상실된 자가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에는 공중 신앙고백을 통하여 교회에 받아들여진다.

c. 등록교인 중 교적이 상실된 자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난 후에 교회에 받아들여야 한다.

d. 당회는 회중에 교인의 출교와 재입교를 주지시키고 또 이 과정에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 제78-81조 보칙 참조

### 78-81조 보칙

a. 당회는 진상을 충분히 파악하고 해당 성도가 자신의 경우를 설명할 충분한 기회를 가진 후에 징계를 실시한다.

b. 당회의 권고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성도는 교적을 박탈당한다. 등록교인의 권리에는 자녀가 세례를 받도록 함, 회중 모임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직분을 가질 수 있는 자격요건을 포함하며, 위에 적은 내용에 제한되지 아니한다.

c. 성도의 교적은 당회가 노회의 승인을 얻은 뒤에 제적 할 수 있다.

d. 노회가 이러한 승인을 할 때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적절한 과정을 통하여 결정하였는지 판단

2) 해당 성도에게 적합한 목회적 돌봄이 주어졌는지 확인

3) 당회가 징계의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지 판단

e. 회개와 교회의 교제로의 회복이 언제나 가능하기 때문에, 노회의 승인은 당회로 하여금 해당 성도의 교회의 교적을 삭제할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

f. 당회가 해당 권징의 목적을 증진시키고 회중의 영적 교제를 도울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훈계와 징계를 위한 예배 형식과 선언을 사용할 수 있다.

(1991 총회회의록, 718쪽)

(2011 총회회의록, 829-30쪽)

## C. 직분자에 대한 훈계와 징계

### 82조

모든 직분자는 일반징계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또한 직분으로부터의 정직과 면직이 포함된 특별징계의 대상도 된다.

### 83조

직분자가 직분자서약의 사항들을 위반할 때, 직무유기 또는 직분을 남용할 때, 그리고 건전한 교리와 경건한 생활에서 크게 벗어난 행위를 할 때 특별한 징계가 적용된다.

- 83조 보칙 참조

### 제 84조

정직 또는 면직된 직분자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고, 또 그가 효과적으로 교회를 봉사할 수 있다고 교회가 판단하면 그를 직분에 복귀시킬 수 있다. 성적 학대나 성적 비행으로 정직 또는 면직된 자가 직분의 회복을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총회가 채택한 지침을 적용한다.

- 제78-84조 보칙 참조

- 제82-84조 보칙 참조

- 제84조 보칙 참조

## 보칙, 78-84조

## 비밀유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훈계와 징계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총회는 다음과 같이 교회에 지침을 권고함으로 카운실과 당회가 엄정하게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인하였다.

- a. 모든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훈계와 징계에 참여하고 또한 그 대상이 됨을 포함하는 교인의 헌신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 b. 직분자들은 그들의 상담과 징계의 대상이 되는 성도들에 관한 비밀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 c. 장로들의 결정과 행동으로까지 연결되는 징계와 회중에 선언되는 징계의 경우에 신중하고 비밀을 유지하는 기록이 작성되어야 한다.
- d. 징계가 공적으로 선언될 때에는 언어의 선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해당 성도가 회개하지 않는다는 점을 포함하지만, 죄는 언급되지 말아야 한다.
- e. 교회의 장로들은 징계하는 과정과 공식 선언에 대한 규칙을 충실하게 따라야 한다.

(1991 총회회의록, 723, 769쪽)

## 제 82-84조 보칙

### 직분자에 대한 훈계와 징계

- a. 카운실은 건전한 신앙고백이나 거룩한 행위를 저버렸다는 고소를 조사하기 위하여 해당 직분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은 채 행정휴직을 줄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급여와 복지혜택은 지속되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해당 직분자가 행할 일들은 카운실이 제시하여야 한다. 모든 유예와 행정정직은 일시적인 것이다.
- b. 성적인 일탈행위를 자백했거나 그러한 죄를 지었다고 판단되는 직분자는 거룩한 행위를 저버린 심각한 죄로 인식되어야 하며 치리의 대상이 된다.
- c. 직분자는 그가 정직당한 후에야 일반징계를 받는다.
- d. 적절한 의결기구에서 해당 징계에 있어서 정직의 절차없이 즉시 면직으로 갈지 여부를 결정한다.
- e. 장로, 집사 및 전도목사 정직 및 면직
  - 1) 카운실은 같은 노회 소속 인근 교회 카운실의 찬동을 얻어서 장로, 집사 또는 전도목사를 정직 또는 면직시킬 수 있다.
  - 2) 만약 인근 교회 카운실이 해당 장로, 집사, 전도목사의 징계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교회 카운실은 징계를 변경하던가 노회에 품신해야 한다.
  - 3) 전도목사의 안수를 승인한 노회의 허락이 없이는 전도목사를 면직할 수 없다.

f. 목사의 정직 (suspension) 및 면직 (deposition)

- 1) 카운실은 같은 노회 소속 인근 교회 카운실의 찬성을 얻어서 목사를 정직시킬 수 있다.
- 2) 만약 인근 교회 카운실이 해당 목사의 징계에 찬성하지 않으면, 해당교회 카운실은 징계를 변경하든지 노회로 올려야 한다.
- 3) 노회의 승인과 총회감독의 동의를 얻어야 목사를 면직시킬 수 있다.

g. 두 개의 카운실에 소속된 목사

- 1) 소속교회 (calling church)가 아닌 교회에 자신의 교적을 둔 목사는 두 교회의 권고와 치리를 받는다. 한 교회가 권징을 시작할 수는 있으나 두 교회가 서로 협의하지 않고 행동할 수는 없다.
- 2) 만약 두 교회 카운실이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해당 사안은 소속교회가 속한 노회에 제출되어 처리한다

h. 정직의 해제는 정직처분을 내린 의결기구의 권한이다.

i. 목사를 면직시킨 카운실은, 면직을 승인한 노회가 총회 대표들의 찬성을 얻어 긍정적으로 판단할 경우, 그 면직된 목사가 청빙 받을 자격이 있다고 선언해야 한다. 면직된 목사가 청빙을 받으면 그 목사는 재임직시켜야 된다.

j. 목사가 치리에 의하여 또는 치리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임할 때 그는 14조 c항에 의거하여 목사직으로부터 면직된다. 이러한 경우에 특별히 14조 b항 보칙의 규정은 14조 c항에 적용된다.

— 14조 c항 보칙 참조

(1991 총회회의록, 719-20쪽)

(2016 총회회의록, 863-64쪽)

(2019 총회회의록 수정, 783쪽)

비고: 카운실과 노회는 1998년도 총회에서 채택된 목사의 정직 또는 면직에 관한 규칙을 주목해야 한다 (1998 총회회의록, 396-99쪽).

**제83조 보칙**

직분 남용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힘의 불균형과 오용이다. 직분자 사역에 주어진 힘은 성스러운 위임이며 절대로 오용되어서는 아니된다.

(2016 총회회의록, 865쪽)

## 제 84조 보칙

### 성적비행을 저지른 직분자의 재임직에 관한 규정

성적비행을 고백하거나 그의 유죄로 말미암아 정직 또는 면직된 직분자가 재임직을 요청하였을 때:

1.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재임직의 요청이 거부된다:

- a.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비행을 한 것을 고백하거나 그렇게 결론이 난 경우
- b. 동일한 교회나 커뮤니티에서 한 사람의 희생자 이상에게 성적비행을 한 것을 고백하거나 그렇게 결론이 난 경우
- c. 한 커뮤니티나 교회 이상에서 성적비행을 한 것을 고백하거나 그렇게 결론이 난 경우
- d. 성적비행과 함께 다른 관련된 죄를 범하였음을 고백하거나 그렇게 결론이 난 경우

관련된 불건전한 행위의 예로 포르노그래피에 참여함, 돈이나 다른 댓가를 받은 성행위, 관음적인 행위, 성적으로 외설적인 물건을 보이기, 성적 불건전을 암시하는 행위나 표시, 그리고 그 밖의 성적으로 공격적인 행위를 포함하지만 이러한 예들에 제한되지 아니한다.

2. 카운실와 노회는 상기 1, a-d에 설명되지 않은 성적비행이나 다른 추악한 행동으로 인하여 정직 또는 면직된 이전 직분자를, 교회의 책임에 관련된 법조인의 권고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격을 갖춘 심리학자로부터 해당 이전 직분자의 재범 가능성에 관해서 들은 후에야 재임직시킨다.

비고 1: 2010년도 총회가 채택한 “교회 지도자의 학대 행위 고소를 다루는 가이드라인” (2010 총회회의록, 503-504쪽 참조)은 성적인 위법행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성적인 접촉이나 행위, 또는 감정적인 친밀함을 만들 목적으로, 상대의 동의를 얻었거나 아니했거나 상황의 차이에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성적인 만족이나 힘의 과시를 누릴 목적으로 어린이나 어른에게 행하는 부당행위와 유도하는 행위.
- 동료나 자원봉사자들 사이에 행해지는 원치않는 접촉, 성적인 행동, 또는 감정적인 친밀함.
- 교회 사역이나 프로그램에서 함께 사역하는 감독자와 하급자 사이에 행해지는 원치않는 접촉, 성적인 행동, 또는 감정적인 친밀함.

비고 2: 해임된 직분자들의 복직을 특정한 상황에서 금지하는 이러한 규정들은 또한 14조에 의하여 해임된 목사들과 그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면직” 또는 “해임된 상태”로 공표된 목사들에게 적용된다.

(2004 총회회의록, 611-12쪽)

(2016 총회회의록, 865-66쪽)

## 결론

### 제 85조

교회는 다른 교회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직분자는 다른 직분자 위에 군림할 수 없다.

### 제 86조

공동의 동의로 채택된 교회 헌법은 충실하게 준수되어야 하며, 이 교회 헌법에 대한 수정은 총회에서만 할 수 있다.

(판권, 2쪽)

이 책은 북미주 개혁교회와 정관 개정위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비고에서 설명한 부분은 2021년 총회에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총회 절차 규칙은 CRC 웹사이트 [www.crcna.org/SynodResources](http://www.crcna.org/SynodResources)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2020, Christian Reformed Church in North America

1700 28th St. SE

Grand Rapids, MI 49508-1407

미국에서 인쇄함.